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22. 9.



₩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22.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서론

- 국세청의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와 경정자료를 이용한 안중석 외(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텍스갭(tax gap)¹⁾은 2011년 기준 6조 7천억~8조원 수준임
 -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이나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이 많아 과소신고 갭(gap)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현금영수증제도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목표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세원 확대와 과세체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과세당국은 현금을 이용한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에 다양한 유인을 제공함
 - 본 연구의 평가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도입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화망을 이용한 소액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을 보전함

- 본 연구에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제도운용 방안을 모색함
 -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 함께 현금사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텍스갭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이론적 세금부담과 실제 세금부담 간의 격차를 의미함

2. 제도 개요 및 현황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이하 ‘본 제도’라고 지칭함)의 목적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에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근거하고 있음
 - 본 제도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화망을 이용한 소액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을 보전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8.4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5천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규모는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감면액은 352억 원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모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감면액은 54억 원임

-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²⁾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³⁾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임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2)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신용거래와 현금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사업자를 말함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⁵⁾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을,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하며, 기재사항은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가능함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⁶⁾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함

□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4) 발급대상 금액은 1원 이상임

5)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

6)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 여러 제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근거하고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본 연구의 평가대상임

3. 타당성 분석

- 타당성은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의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함
- (정부 역할의 적절성) 동 제도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함
 - 현금거래에 대한 과표 양성화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둘 경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인정됨
 -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탈루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소득별 공정과세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를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동 제도는 제도 운영목표와 최종정책목표 간의 인과성이 명확하며, 정부의 개입 없이는 제도의 운영목표 및 최종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임을 고려한다면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제도의 1차적 목표: 동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세제지원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제도의 궁극적 목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나아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책수단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평가는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의 구조적 설계는 대체로 정책목표와

일관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함

- (지원대상) 동 제도가 현금영수증 발급비용의 지불주체인 현금영수증사업자와 소액거래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해야 할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함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로서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수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동 제도는 실비보상적 지원이며 현금영수증 제도를 계속하는 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원은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될수록 해당 지원은 그 필요성이 약화될 것으로 평가됨
- (지원방식)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은 발행건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건당 공제방식의 지원은 적절한 구조로 평가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실비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도 사업자의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에 비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목을 공제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 같은 관점에서 가맹점에 대하여 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실비보전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한시적인 운영보다는 본법(「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함
- (지원수준) 동 제도의 지원수준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나 당장의 조정보다는 보다 엄밀한 비용평가 분석과 함께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에 대한 공제단가는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안정화 측면에서나 전화망을 사용한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발급비용의 보전 측면 모두에서 현재의 지원수준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수준도 정기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나, 최근 종이류 품목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동 제도와 관련된 제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며, 이 중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유사성이 인정됨
 -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제도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와 지원대상이 동일하며, 지원방식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비례적으로 세액공제를 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 다만, 공제 세목과 공제방식(건당 정액공제 vs. 발행금액의 비율로 공제)에서는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음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제도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원 수준이나 지원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 제도와 관련은 있으나 수혜대상과 지원내용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동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은 없다고 평가됨

4.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1: 제도의 전반적 비용-편익 분석) 현금영수증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세지출(비용) 대비 과표양성화 효과를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가정하에 편익과 비용을 추정
 - (편익)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따라 소득탈루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확보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치세 추가 세수입으로 정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정

$$\begin{aligned} \text{과표양성화 추정액} &= \text{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액}^1) \times \text{근로소득자 수}^2) \\ \text{추가 세수입(편익)} &= \text{과표양성화 추정액} \times \text{실효세율}^3) \times \text{소득탈루율}^4)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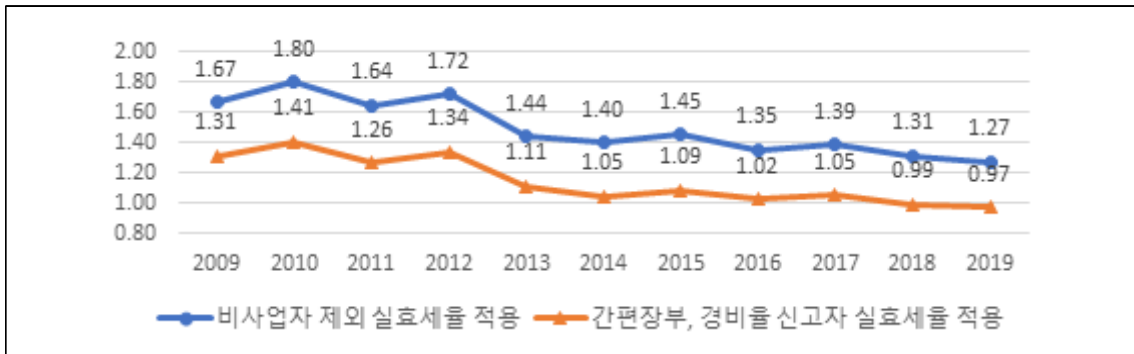
- 1) 재정패널 가구원조사 자료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평균한 값
- 2) 재정패널 가구원조사 자료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수로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 3)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과세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비사업자 제외: 12.6~14.8%, 간편장부, 경비율 신고자만 고려: 7.4~8.4%)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성명제(2013)의 추정치를 준용(11.8%)
- 4) 신영임·강민지(2014)의 추정치를 준용(20.8%)

○ (비용) 본 조세특례에 의한 직·간접적인 조세지출의 합으로 정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정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text{조세지출} = \sum_{\text{과표구간별}} \text{한계세율} \times \text{소득공제금액}$ $\text{소득공제금액} = \text{평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1) \times \text{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원}^2)$
(B)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text{조세지출} = \text{현금영수증 관련 조세지출} \times (1 + \text{간이과세자 비율} \times \text{음식·숙박업 비율}^3)4)$ $\text{현금영수증 관련 조세지출} = \text{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times \text{현금영수증 발급 비율}^5)$
(C)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	
조세지출의 합(비용) = (A) + (B) + (C)	

- 1) 재정패널조사 자료 활용하여 추정
- 2) 추정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이 0을 초과하는 자의 수로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 3)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의 비율
- 4)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공제율보다 2배 높다는 점을 고려
- 5)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비율을 계산

○ (비용-편익) 비용 대비 편익은 감소추세이고, 2019년 기준으로 조세지출 1원이 0.97~1.27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



- 만약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한 행정비용, 납세협력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비용-편익 값은 더 낮은 수준일 것
- 2013년 비용-편익의 급락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25% → 30%)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
- 2013년 이후 비용-편익의 지속적 하락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확대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⁷⁾

- (효과성 분석2: 세액공제 단가 변화의 효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단가가 2013년, 2017년, 2018년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함
 - 세액공제 지원 단가 조정은 실제 사업자들의 단가변화를 고려한 내생적인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이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식별하기는 어려움
 - 단, 단가 변화가 실제 시장에서의 비용인하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세액공제 단가 변화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7)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추가 공제한도를 부여하고 공제율도 40%로 인상하였고,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추가공제항목들이 신설됨

목 차

I. 서론	15
II. 제도 개요 및 현황	21
1. 제도 개요	23
2. 제도 연혁 및 기초통계	31
III. 타당성 평가	47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50
가. 시장의 실패와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50
나. 정책목표의 달성여부	52
2. 정책수단의 적절성	58
가. 지원대상의 적절성	58
나. 지원방식의 적절성	65
다. 지원수준의 적절성	67
3. 타 제도와와의 유사중복성	75
4. 소결	76
IV. 효과성 분석	79
1.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82
가. 편익 추정	83
나. 비용 추정	86
다. 비용-편익 분석	96
2. 세액공제 단가 조정의 효과성 분석	98
V.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8

부 록 111

표 목 차

<표 II-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25
<표 II-2>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27
<표 II-3> 업종 및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31
<표 II-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주요 연혁	32
<표 II-5>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변경사항	33
<표 II-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34
<표 II-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34
<표 II-8> 연도별 조세지출금액	36
<표 II-9>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37
<표 II-10>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현황	39
<표 II-11>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현황	40
<표 II-12>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	42
<표 II-1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금액	43
<표 II-14>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44
<표 III-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	53
<표 III-2>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56
<표 III-3>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57
<표 III-4> 지역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2020년 말 기준)	62
<표 III-5> 사업기간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64
<표 III-6> 대표자 연령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64
<표 III-7> 발급수단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65
<표 III-8> 발급용도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65
<표 III-9> 소액 현금결제에 대한 발급실적 추이	72
<표 IV-1> 연도별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84

<표 IV-2> 연도별 과세표준 양성화 및 추가 소득세 세입 추정 결과	85
<표 IV-3> 2019년 귀속 근로소득 대비 과세표준 비율(예시)	87
<표 IV-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금액 추정 결과	87
<표 IV-5> 연도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정액	92
<표 IV-6>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추정액	93
<표 IV-7>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금액	94
<표 IV-8>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의 조세지출금액(비용)	95
<표 IV-9> 연도별 비용-편익 추정 결과	97
<표 IV-10>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건수, 금액	100
<부표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과 사업체수, 매출액, 결정세액 비중 ...	114
<부표 2> 의무업종 지정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미친 영향	119
<부표 3> 규모별 의무업종 지정 효과	119
<부표 4> 업종별 2010년 의무업종 지정의 효과	120

그림 목 차

[그림 II-1]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24
[그림 II-2] 조세지출금액 추이	36
[그림 II-3]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평균 발급금액 추이	38
[그림 II-4]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발행금액)	40
[그림 II-5]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건수기준)	41
[그림 II-6] 현금영수증가맹점 추세	45
[그림 III-1] 현금영수증가맹점 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추이	54
[그림 III-2] 신용카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추이	55
[그림 III-3]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추이	55
[그림 III-4]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추이	57
[그림 III-5] 지역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분포	63
[그림 III-6]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변천	69
[그림 III-7]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70
[그림 III-8] 월별 소비자물가지수(종이 영수증 관련 품목) 추이	70
[그림 III-9] 5천원 미만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추이	74
[그림 III-10] 소액결제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추이	74
[그림 IV-1] 연도별 비용-편익 추정 결과	97
[그림 IV-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금액	101
[그림 IV-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건수	103
[부도 1] Alm, and Harris(2021)의 event study 결과	115
[부도 2]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분포	117
[부도 3] 의무업종 지정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미친 영향	118

I. 서론



I. 서론

- 국세청의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와 경정자료를 이용한 안종석 외(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택스갭(tax gap)¹⁾은 2011년 기준 6조 7천억~8조원 수준임
 -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이나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이 많아 과소신고 갭(gap)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납세불순응은 세수입뿐만 아니라 조세의 효율비용, 세부담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세의 효율비용은 납세불순응 등 경제주체의 행태반응이 크게 나타날수록 증가함
 -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조세회피 수단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세무조사, 성실사업자 우대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용카드 공제제도, 현금영수증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옴

- 현금영수증제도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목표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세원 확대와 과세체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과세당국은 현금을 이용한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에 다양한 유인을 제공함
 - 본 연구의 평가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도입됨

1) 택스갭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이론적 세금부담과 실제 세금부담 간의 격차를 의미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화망을 이용한 소액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을 보전함
- 본 연구에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제도운용 방안을 모색함
-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 함께 현금사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 분석에서는 본 특례의 유지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부 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의 설정, 지원방식 및 혜택정도의 적절성, 유사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검토
 - 현금영수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본 조세특례의 필요성 검토
 - 제도 연혁에 따른 정책대상 변화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단가의 조정 여부 점검
 -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검토 등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가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효과성 분석에서는 도입목적 달성 여부, 조세특례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국세청 미시자료,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등을 이용하여
 - 1) 현금영수증제도 전체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2) 세액공제 단가 변화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1) 일차적으로 본 제도를 포함한 현금영수증제도 전체의 효과성을 검증
 - 현금영수증제도의 다양한 제도들 중의 하나인 본 조세특례의 효과만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
 - 2) 세액공제 단가 변화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면, 본 조세

특례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제한적으로나마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의 개요,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타당성 평가와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며, 제Ⅴ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마무리함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이하 ‘본 제도’라고 지칭함)의 목적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에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근거하고 있음
 - 본 제도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을 보전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8.4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5천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²⁾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³⁾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임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2)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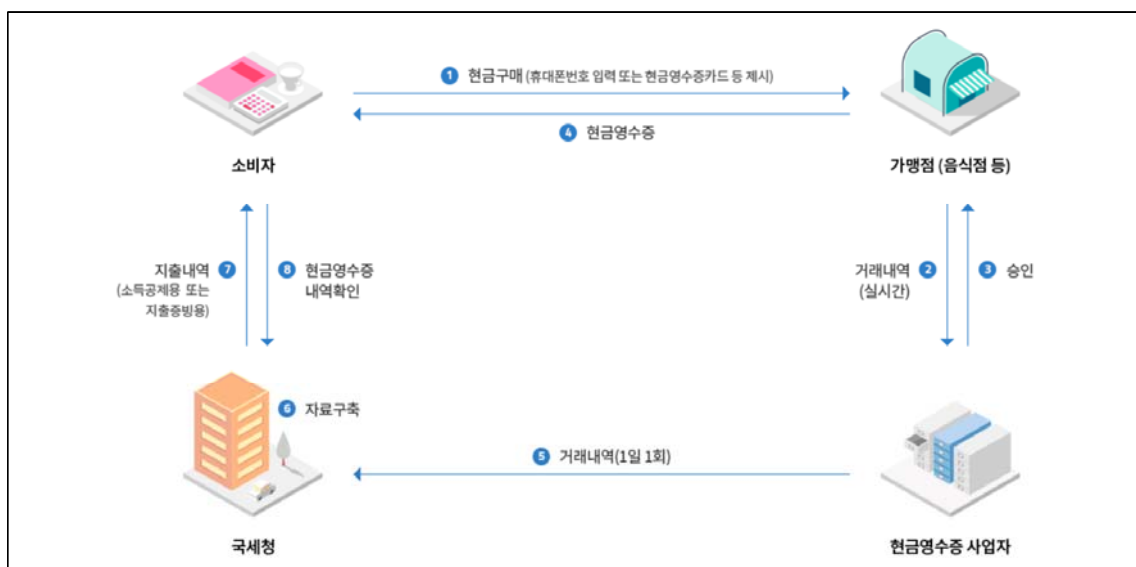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신용거래와 현금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사업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 결제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소비자(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는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 2)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 3)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 4)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 5)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 1회)
- 6)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 7)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 8) 소비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조회

[그림 II -1]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8&cntntsId=7793>, 검색일자: 2022. 3. 28.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⁵⁾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하며, 기재사항은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가능함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⁶⁾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함

〈표 II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4) 발급대상 금액은 1원 이상임

5)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6)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표 II -1>의 계속

구분	업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검색일자: 2022. 4. 4.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함
 - (개인사업자)⁷⁾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임⁸⁾
 - 1)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7)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8)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른 가입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는 ① 택시운송사업자 ②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임

- 2) 업종 기준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i)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ii)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iii)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법인사업자)⁹⁾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임¹⁰⁾

〈표 II -2〉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구분	업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노점상업·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 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9) 「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10)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른 가입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표 II -2〉의 계속

구분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접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검색일자: 2022. 4. 6.

-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여러 제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근거하고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본 연구의 평가대상임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¹¹⁾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¹²⁾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30%¹³⁾
 -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임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¹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 거부금액에 따라 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¹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¹⁶⁾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13) 구체적인 공제대상금액은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40% ③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15%+(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30%+(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40%

1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15) 「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유인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 시 제재)¹⁷⁾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¹⁸⁾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창업중 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혜택을 배제함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제재)¹⁹⁾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²⁰⁾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²¹⁾ 명령서²²⁾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 부과함²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2019. 1. 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함²⁴⁾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²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원,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²⁶⁾ 5천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²⁷⁾
 - (최저한세 적용)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16)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17)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18)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19)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20)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21)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2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23)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24)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25)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27)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법 제132조 제2항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그 특례 범위가 제한됨

<표 II -3> 업종 및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 1.	해당연도의 3. 31까지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검색일자: 2022. 4. 6.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유인 정책은 다음과 같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²⁸⁾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음
 -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

2. 제도 연혁 및 기초통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은 2003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표 II-4>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특례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²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당 12원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함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이 2008년 7월 1일부터 건당 5,000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 보전을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도입

<표 II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3. 12. 30.	<p>「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등)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 과세특례(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설치건수당 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5천원 이상 ○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조서 제출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적용(현금영수증 결제건수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
200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26조의 3의 제목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 1건당 20원(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 일몰기한 설정(2010년 12월 31일까지)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1원 이상
2008.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요건 중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국세청장이 승인) ○ 명칭 변경: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2010.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표 II -4>의 계속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13. 2. 15. (시행령 개정)	○ 과세특례(시행령)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결제건수당 18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2014. 1. 1.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삭제
2017. 12. 19.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폐지
2018. 2. 13. (시행령 개정)	○ 과세특례(시행령)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결제건수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2020. 12. 29.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22. 4. 4.

-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7년 6월 단가가 인하된 바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폐지됨
 -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단가는 2013년 7월, 2017년 6월, 2018년 4월, 2019년 7월 인하됨

<표 II -5>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변경사항

연도	발급장치 설치건수	결제건수	
		종이 발급	종이 미발급
2005. 1.~2013. 6.	17,500원	22원	15.4원
2013. 7.~2017. 6.	17,500원	18.7원	13.2원
2017. 6.~2018. 3.	15,000원	17원	12.6원
2018. 4.~2019. 6.	삭제	12.5원	11.5원
2019. 7.~	삭제	9.4원	8.4원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22. 4. 4.

-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의 경우 발급건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제도 도입 이후 변화 없이 20원으로 유지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 4월 1일부터 32개의 업종, 30만원 이상인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시행됨

- 의무발행업종은 도입 초기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유흥주점, 숙박업, 미용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들로 확대됨
 - 의무발행업종의 수는 2010년 32개에서 2022년 95개로 확대됨
- 2014년 7월부터 의무발행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됨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는 2014년 7월과 2016년 1월 인하됨
- 2019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제재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에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로 변경됨

〈표 II -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용
2010. 4.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신설
2014. 7. 1.	의무발행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원 → 10만원)
2014. 7.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원 → 100만원, 연간 1,500만원 → 500만원)
2016. 1.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원 → 50만원, 연간 500만원 → 200만원)
2019. 1. 1.	미발급 시 제재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표 II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 1.	4개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표 II -7>의 계속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2014. 1. 1.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 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 6. 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 7. 1.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 1.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 1.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 1.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 1. 1.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2022. 1. 1.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2. 1. 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21. 12. 15.

- 2009년 이후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감면액은 352억 원임
 - 세액공제 단가가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인하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감면액은 54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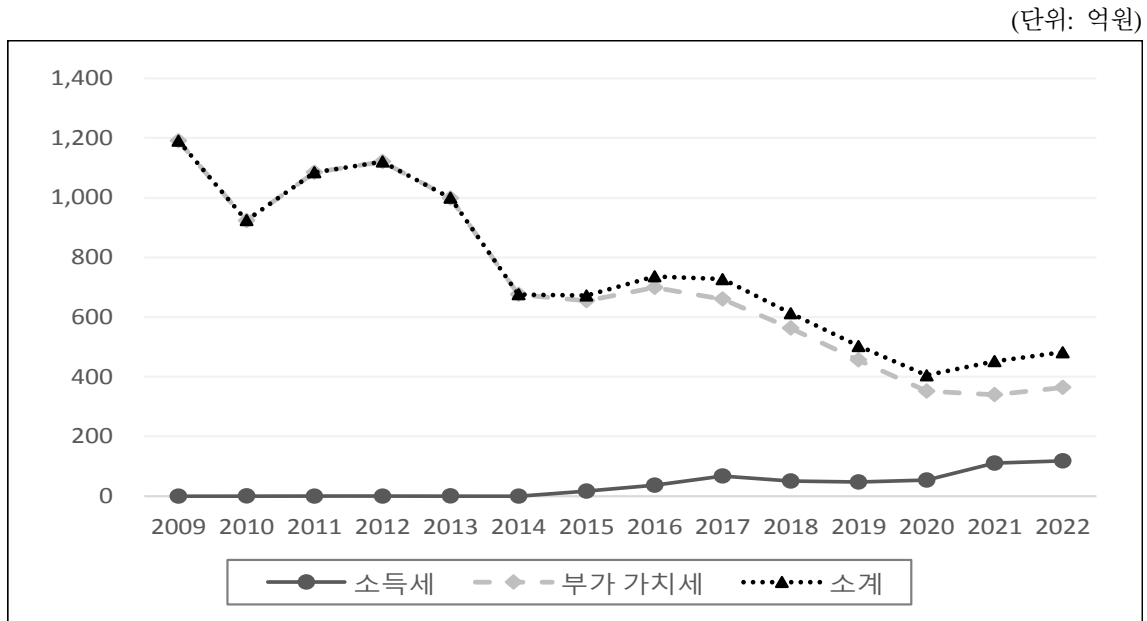
〈표 II -8〉 연도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²⁾	2022 ²⁾
소득세	0.0	0.3	0.0	0.0	0.3	0.1	17.0	37.0	67	50	47	54	111	118
부가 가치세	1,191.0	924	1,085.0	1,121.0	999.0	676.0	655.0	699.0	660	563	456	352	340	364
소계	1,191.0	924.3	1,085.0	1,121.0	999.3	676.1	672.0	736.0	727	613	503	405	452	482

주: 1) 2009년 소득세 조세지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조세지출금액 구분의 오류가 확인되어 『조세지출 예산서』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값을 서로 바꿈
 2) 2021년과 2022년은 전망값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그림 II -2] 조세지출금액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5년간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발급금액의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32.6%, 4.9%, 5.0%임

- 발급금액은 2005~2020년 기간 6.6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005~2010년에 급증하였으나 이후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에도 감소하고 있음
 - 발급건수의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61.6%, 0.4%, -3.9%임
 - 최근의 발급건수 감소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인한 영향일 수 있음
- 현금영수증 평균 발급금액의 규모는 2006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평균 발급금액의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7%, 4.6%, 9.3%임
 - 2008년 7월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평균 발급금액의 변화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 -9>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

연도	건수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건당 금액	전년 대비
2005	448,936	-	18,559,848	-	41,342	-
2006	737,748	64.3	30,626,609	65.0	41,514	0.4
2007	1,489,273	101.9	50,256,147	64.1	33,745	-18.7
2008	2,889,925	94.0	61,555,892	22.5	21,300	-36.9
2009	4,441,966	53.7	68,698,365	11.6	15,466	-27.4
2010	4,951,522	11.5	75,956,526	10.6	15,340	-0.8
2011	5,187,350	4.8	80,890,098	6.5	15,594	1.7
2012	5,257,101	1.3	82,388,996	1.9	15,672	0.5
2013	5,227,216	-0.6	85,515,208	3.8	16,360	4.4
2014	5,192,920	-0.7	91,946,468	7.5	17,706	8.2
2015	5,045,846	-2.8	96,546,379	5.0	19,134	8.1
2016	5,024,664	-0.40	101,257,671	4.90	20,152	5.3
2017	4,792,949	-4.60	108,655,286	7.30	22,670	12.5
2018	4,530,850	-5.50	116,463,906	7.20	25,705	13.4
2019	4,508,772	-0.5	118,576,170	1.8	26,299	2.3

<표 II -9>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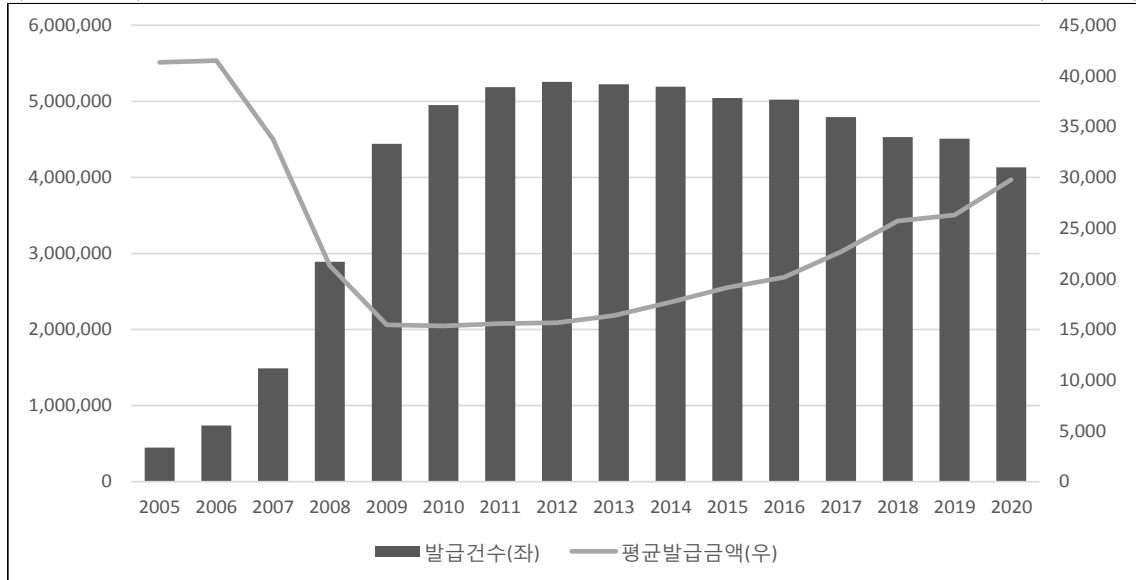
연도	건수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건당 금액	전년 대비
2020	4,132,409	-8.3	123,044,773	3.8	29,776	13.2
연평균 증가율 (2005~ 2010)	61.6		32.6		-16.7	
연평균 증가율 (2010~ 2015)	0.4		4.9		4.6	
연평균 증가율 (2015~ 2020)	-3.9		5.0		9.3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p. 60 <표 IV-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3]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평균 발급금액 추이

(단위: 만건)

(단위: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업체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발행금액) 2020년 기준 소매업이 전체 발행금액의 3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과 음식업이 각각 7.8%와 5.7%를 차지하고 있음²⁹⁾

- 최근 10년간 발행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업태는 서비스업(249%), 학원(183%), 숙박업(161%), 소매업(151%)임
- (발행건수) 2020년 기준 소매업이 전체 발행건수의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업과 병의원이 각각 7.4%와 1.6%를 차지하고 있음³⁰⁾
- 최근 10년간 발행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업태는 학원(120%), 전문직(95%), 소매업(76%), 음식업(70%)임
- 숙박업의 경우 2010~2018년에 발행 금액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급감함

<표 II -10>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현황

(단위: 억원)

가맹점 업태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매업	300,821	323,600	324,571	322,199	328,963	340,854	349,360	384,567	418,860	420,137	454,896
음식업	75,276	75,983	75,370	72,644	75,571	75,081	71,911	67,087	65,520	69,586	70,951
숙박업	4,716	7,156	7,161	7,433	9,169	9,176	11,198	20,034	24,021	13,172	7,607
병의원	51,952	49,476	50,959	56,162	61,837	63,151	65,391	66,089	66,689	70,219	67,455
학원	16,743	17,592	19,228	20,016	21,571	24,481	26,499	27,497	28,778	29,665	30,559
전문직	21,527	25,099	25,977	26,289	27,162	32,071	38,879	38,830	40,387	32,832	29,492
서비스업	38,614	49,681	50,727	54,497	61,776	84,321	94,694	113,574	107,404	108,888	96,302
기타	249,916	260,314	269,898	295,913	333,416	336,330	354,644	368,876	412,981	441,264	473,186
총합	759,565	808,901	823,890	855,152	919,465	965,464	1,012,577	1,086,553	1,164,639	1,185,762	1,230,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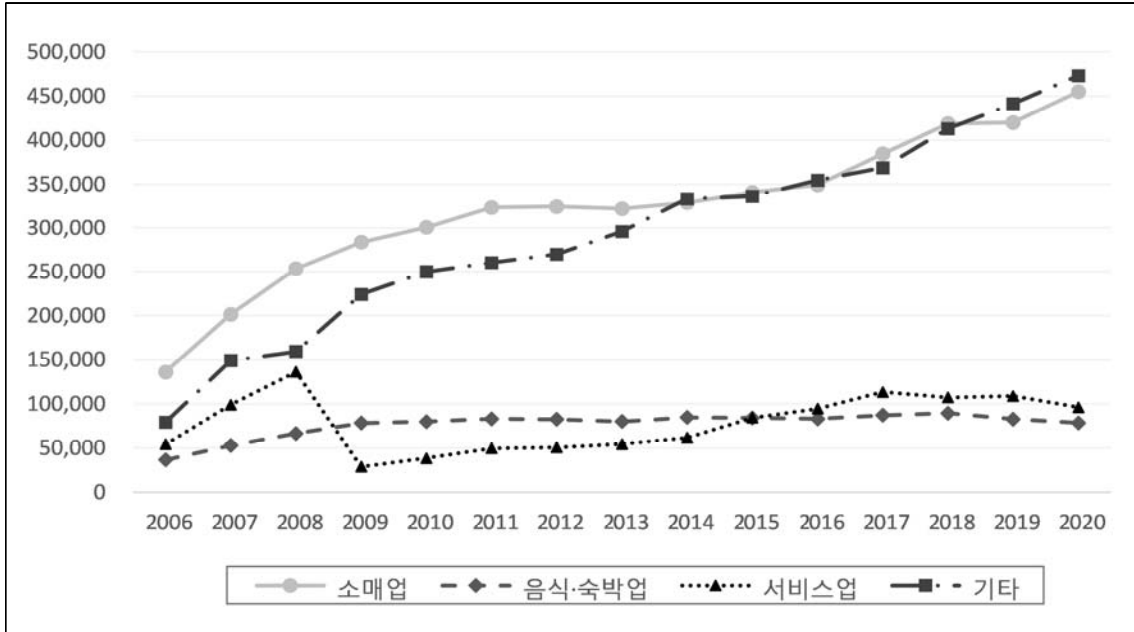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9) 기타로 분류된 업태의 비중이 전체의 38.5%에 이룸

30) 기타로 분류된 업태의 비중이 전체의 34.5%에 이룸

[그림 II -4]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발행금액)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11>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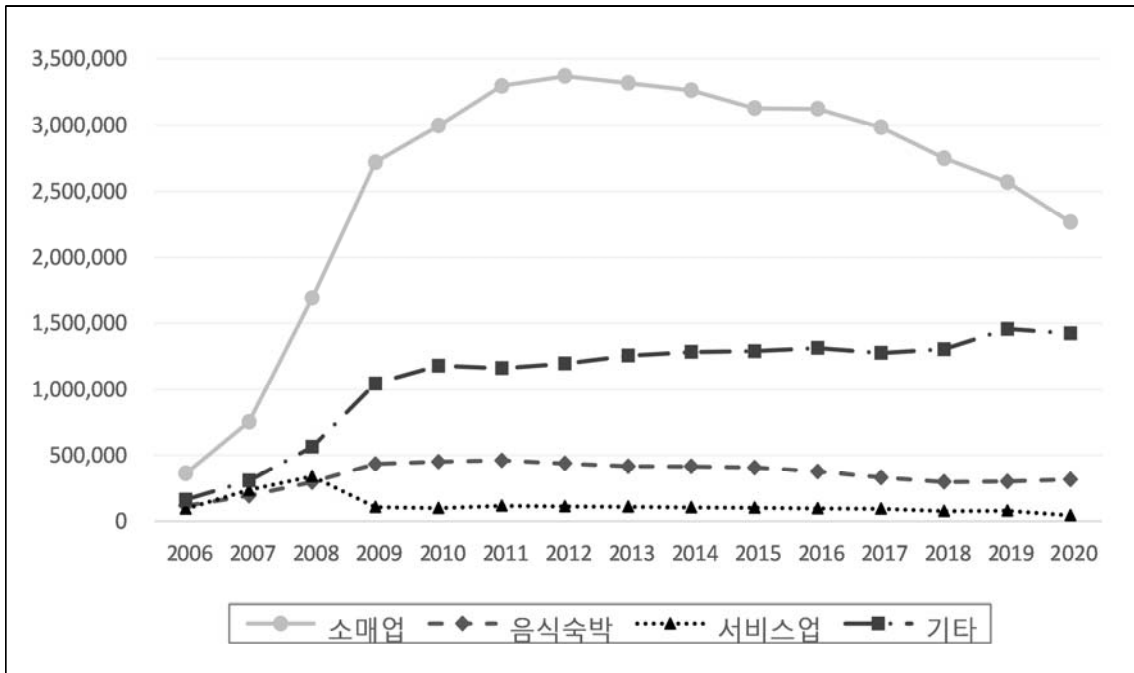
(단위: 천건)

가맹점 업태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매업	299,6318	329,6880	337,0678	331,8184	326,2998	312,8033	312,3034	298,4348	275,1294	257,0719	226,8242
음식업	439,501	439,724	415,701	395,050	397,562	389,748	358,210	312,802	279,096	285,064	309,608
숙박업	10,992	19,855	20,015	19,500	16,299	15,130	17,004	17,625	17,313	15,735	5,864
병의원	211,866	140,602	130,243	118,438	114,683	106,520	101,486	93,175	86,059	83,729	65,456
학원	8,429	6,831	6,461	6,284	7,778	8,573	9,097	9,089	9,658	12,614	10,124
전문직	4,347	4,502	4,762	4,324	5,459	5,016	4,897	4,837	4,819	4,069	4,150
서비스업	99,923	116,819	112,112	109,278	104,835	102,387	97,770	95,114	77,184	80,166	44,924
기타	1,180,146	1,162,137	1,197,129	1,256,158	1,283,306	1,290,439	1,313,166	1,275,959	1,305,427	1,456,676	1,424,041
총합	4,951,522	5,187,350	5,257,101	5,227,216	5,192,920	5,045,846	5,024,664	4,792,949	4,530,850	4,508,772	4,132,4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5]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건수기준)

(단위: 천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는 다음과 같음

-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비중은 일관되게 절반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감소하여 40%에 수준에 이룸
 - 발급 건수는 2018년 222만, 2019년 214만, 2020년 167만
-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전체 대비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발급 건수는 2009년 1.8만(0.4%), 2014년 2.9만(0.6%), 2020년 4.2만(1.0%)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2014년 이후 10만~30만원의 거래건수가 크게 증가함
 - 발급 건수는 2009년 6.8만(1.5%), 2013년 7.8만(1.5%), 2014년 8.9만(1.7%), 2020년 11.4만(2.8%)

〈표 II - 12〉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

(단위: 천건)

발급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1천원	379,187	420,193	417,081	405,655	379,622	358,632
1천~3천원	1,318,232	1,531,025	1,654,065	1,701,690	1,688,440	1,648,586
3천~5천원	578,636	679,052	718,442	733,665	747,653	725,574
5천~1만원	822,438	900,396	924,472	911,396	906,220	918,195
1만~3만원	879,225	933,376	957,619	977,390	984,380	1,001,831
3만~5만원	238,255	244,134	261,288	266,000	262,313	261,657
5만~10만원	140,191	148,369	153,502	155,984	153,349	160,828
10만~30만원	67,557	73,061	77,643	80,414	78,414	88,805
30만~50만원	8,843	10,412	10,813	11,417	12,326	13,238
50만원 이상	9,402	11,504	12,425	13,490	14,499	15,574

발급금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1천원	357,334	358,865	337,258	318,846	361,622	257,808
1천~3천원	1,235,894	1,222,280	1,157,879	1,043,603	979,964	755,757
3천~5천원	1,002,103	996,832	934,945	857,456	795,978	655,944
5천~1만원	940,710	948,412	901,129	836,477	816,409	739,369
1만~3만원	966,711	932,512	880,293	869,199	925,812	1,043,178
3만~5만원	255,528	266,079	272,901	280,251	290,951	319,562
5만~10만원	162,129	166,189	169,792	178,520	187,927	205,338
10만~30만원	93,685	98,739	101,039	106,060	109,155	113,868
30만~50만원	14,239	15,553	16,423	17,437	17,819	18,047
50만원 이상	17,513	19,203	21,290	23,001	23,135	23,53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 1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금액

(단위: 억원)

발급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1천원	2,250	2,499	2,505	2,495	2,350	2,226
1천~3천원	25,495	29,294	31,669	33,138	32,971	31,744
3천~5천원	21,725	25,374	26,796	27,640	27,766	27,245
5천~1만원	54,323	59,550	60,963	60,600	60,447	61,175
1만~3만원	143,448	152,365	158,464	164,620	168,251	171,568
3만~5만원	85,771	87,573	93,202	94,288	94,373	94,349
5만~10만원	90,302	95,171	98,316	97,729	98,587	103,696
10만~30만원	98,706	106,368	112,806	112,864	117,804	132,060
30만~50만원	30,523	35,782	37,141	37,418	40,513	46,376
50만원 이상	134,441	165,589	187,040	193,097	212,091	249,026

발급금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1천원	2,212	2,180	2,035	1,864	1,825	1,323
1천~3천원	21,108	20,766	19,619	17,753	16,769	13,394
3천~5천원	40,144	39,865	37,248	34,103	31,490	25,722
5천~1만원	66,207	66,876	63,394	58,869	57,256	52,139
1만~3만원	164,092	157,166	148,053	145,723	155,382	177,340
3만~5만원	92,367	96,792	100,153	103,690	107,522	116,477
5만~10만원	104,599	107,545	109,736	114,777	119,475	132,732
10만~30만원	139,451	147,729	152,113	159,081	161,489	171,267
30만~50만원	49,850	54,611	58,013	61,573	62,181	63,911
50만원 이상	285,434	319,047	396,187	467,206	472,373	476,14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연도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77만에 이룸
 - 2010년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확대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의 비중은 27.2%, 21.6%, 15.0%임
 - 모든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기준, 소매업, 학원, 서비스업의 증가가 빠름

<표 II -14>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수	소매업	음식· 숙박업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2005	1,144,193	317,503	403,924	-	-	-	206,800	215,966
	(100.0)	(27.7)	(35.3)	-	-	-	(18.1)	(18.9)
2006	1,401,111	389,870	454,137	-	-	-	321,925	235,179
	(100.0)	(27.8)	(32.4)	-	-	-	(23.0)	(16.8)
2007	1,725,485	496,110	509,101	-	-	-	393,450	326,824
	(100.0)	(28.8)	(29.5)	-	-	-	(22.8)	(18.9)
2008	1,918,681	538,496	543,191	-	-	-	447,927	389,067
	(100.0)	(28.1)	(28.3)	-	-	-	(23.3)	(20.3)
2009	2,118,586	571,703	571,126	58,017	96,876	29,275	257,038	534,551
	(100.0)	(27.0)	(27.0)	(2.7)	(4.6)	(1.4)	(12.1)	(25.2)
2010	2,290,230	607,633	593,082	59,470	102,725	32,285	269,730	625,305
	(100.0)	(26.5)	(25.9)	(2.6)	(4.5)	(1.4)	(11.8)	(27.3)
2011	2,397,840	631,336	611,096	60,943	107,165	36,939	275,634	674,727
	(100.0)	(26.3)	(25.5)	(2.5)	(4.5)	(1.5)	(11.5)	(28.1)
2012	2,464,874	657,229	627,747	62,107	109,768	36,054	298,642	673,327
	(100.0)	(26.7)	(25.5)	(2.5)	(4.5)	(1.5)	(12.1)	(27.3)
2013	2,702,929	781,971	671,452	64,754	127,056	43,217	388,698	625,781
	(100.0)	(28.9)	(24.8)	(2.4)	(4.7)	(1.6)	(14.4)	(23.2)
2014	2,827,007	805,515	704,020	66,524	130,166	65,797	413,435	641,550
	(100.0)	(28.5)	(24.9)	(2.4)	(4.6)	(2.3)	(14.6)	(22.7)
2015	2,931,193	734,063	721,239	68,051	131,988	69,471	417,676	788,705
	(100.0)	(25.0)	(24.6)	(2.3)	(4.5)	(2.4)	(14.2)	(26.9)
2016	3,044,761	805,918	742,809	69,635	136,993	49,173	443,462	796,771
	(100.0)	(26.5)	(24.4)	(2.3)	(4.5)	(1.6)	(14.6)	(26.2)
2017	3,197,310	851,188	760,446	71,178	144,219	51,753	479,053	839,473
	(100.0)	(26.6)	(23.8)	(2.2)	(4.5)	(1.6)	(15.0)	(26.3)
2018	3,340,699	886,211	779,921	72,439	151,444	53,354	505,471	891,859
	(100.0)	(26.5)	(23.3)	(2.2)	(4.5)	(1.6)	(15.1)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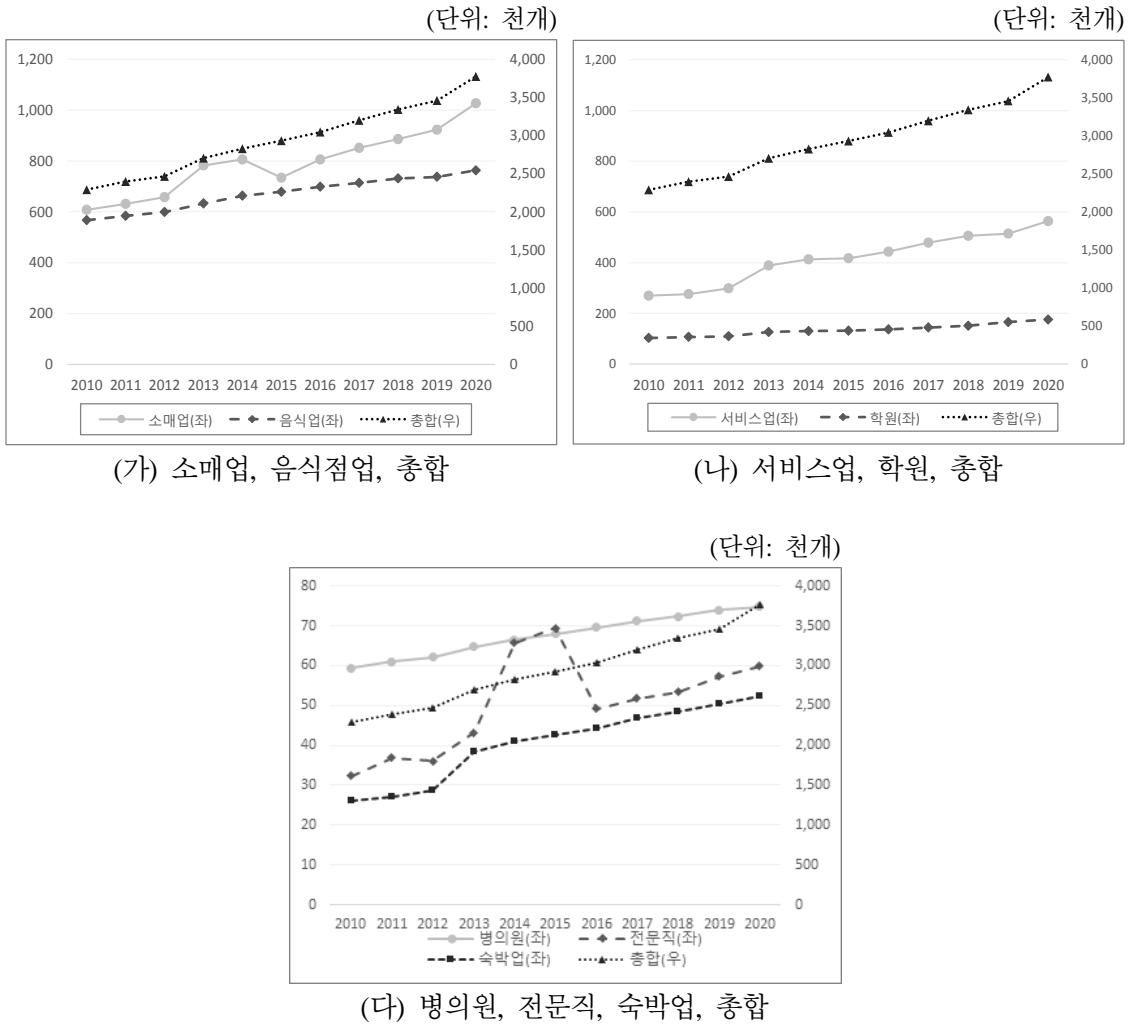
<표 II -14>의 계속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수	소매업	음식· 숙박업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2019	3,457,029	923,288	787,895	73,909	165,677	57,340	513,968	934,952
	(100.0)	(26.7)	(22.8)	(2.1)	(4.8)	(1.7)	(14.9)	(27.0)
2020	3,773,588	1,026,696	815,582	74,804	175,793	59,829	564,337	1,056,547
	(100.0)	(27.2)	(21.6)	(2.0)	(4.7)	(1.6)	(15.0)	(28.0)

주: 1. () 안은 비중
 2. '-'은 통계생산 없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6] 현금영수증가맹점 추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Ⅲ. 타당성 평가



Ⅲ. 타당성 평가

- 본 심층평가의 타당성 평가는 크게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에 대하여 진행함
 - 타당성 평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9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9조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정부 역할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상의 수행방법의 적절성을 정책수단의 적절성과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함

- 정부 역할의 적절성은 동 제도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과연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는 항목임
 -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보는 항목임
 - 본 항목에서는 정책의 도입근거뿐 아니라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살펴봄
 -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정부 개입이 타당하였더라도 현재는 제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더 이상 제도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포함됨

-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동 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는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됨
 - (지원대상의 적절성) 동 제도의 수혜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지원방식의 적절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 어떠한 것이 더 적절한지, 제도 설계상 정책 대상자들이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행태를 조정할 경제적 유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지원수준의 적절성) 지원규모가 정책에서 목표하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를 평가함

-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은 수혜자나 혜택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여타 제도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임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복수의 정책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각 정책이 적절히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시장의 실패와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됨
 - ‘시장의 실패’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함(이준구·조명환, 2021; 나성린 외, 2022)
 - 불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 동 제도의 운영목표는 기본적으로 현금거래에 대한 포착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라 할 수 있음
 -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제도의 도입목적은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제고하는 것으로 명시됨
 - 윤충식 외(2017)에서는 동 제도를 “현금을 통한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현금

영수증제도를 뒷받침하고자(p. 1848)” 신설하였다고 설명함

-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대상자들에게 예상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세제적인 보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목표는 최종적인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그 인과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 1차적 목표: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적인 지원
 - 2차적 목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통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 최종 목표: 과세표준 양성화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 그런데 이러한 과세표준 양성화는 시장에 맡길 경우,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금 거래당사자들에게는 굳이 자발적으로 거래내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음
 - 오히려 판매자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가맹점’)의 경우, 정부에서 현금거래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거래실적을 과소보고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할 경제적인 유인이 있음
 - 이러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거래당사자들과 과세 당국 사이의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임
 -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급비용을 떠안지 않을 경우 가맹점은 될 수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될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도 자비(自費)로 영수증 발급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유인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금거래에 대한 과표 양성화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둘 경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탈루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소득별 공정과세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를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동 제도의 운영목표와 최종정책목표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정부의 개입 없이는 제도의 운영목표 및 최종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임을 고려한다면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됨

나. 정책목표의 달성여부

- 한편,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정착되었다는 평가도 있어 동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이슈임
 - 주로 동 제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하는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근거로 할 수 있음
 -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정착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및 기타 전자결제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이 보편화되고 있어 현금거래에 대한 포착의 중요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시각임
-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동 제도의 조세지출금액이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영수증 활용이 정점에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II-8>, <표 II-9>, [그림 II-3] 참조)
 - 2015~2020년 사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연평균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의 조세지출금액은 2016년 736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405억원으로 2016년 대비 45%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13.9%씩 감소한 것임
- 그렇지만 발급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그림 III-1] 참조)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해도 감소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율(2015~2020년)은 5.0%로 2010~2015년 사이 증가율(4.9%)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II-9> 참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도 가입자 수가 2005년 1,144,193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3,773,588명으로 증가함(<표 II-14> 참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자 구성상으로도 가입지정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지정자 외 가입자도 일정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가입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입지정자의 가입비율은 2020년 98.4%로 거의 포화상황이지만, 이러한 가입비율은 2007년부터 지속된 수치이며 가입비율의 추가 증가여지보다는 가입지정자의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표 III-1> 참조)

<표 III-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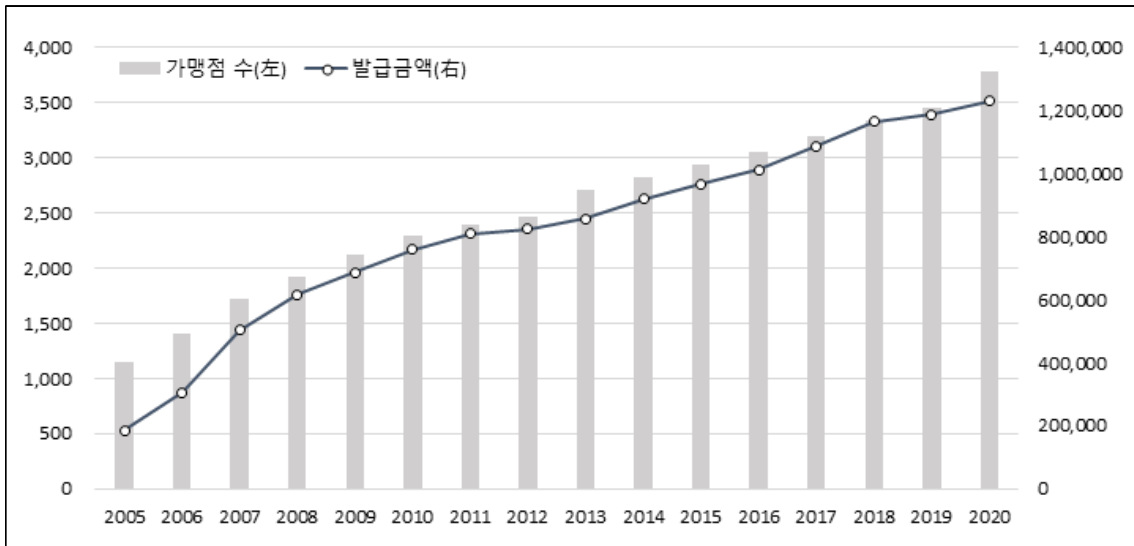
연도	전체 가입자 수 (1=3+5)	가입지정자			가입의무 외 가입자 (5)
		가입지정자 (2)	가입자 (3)	가입 비율 (4=3/2)	
2005	1,144,193	1,219,345	931,942	76.4	212,251
2006	1,401,111	651,115	548,541	84.2	855,570
2007	1,725,485	821,492	810,983	98.7	914,502
2008	1,918,681	880,298	860,906	97.8	1,057,775
2009	2,118,586	966,983	948,091	98.0	1,170,495
2010	2,290,230	1,010,172	996,589	98.7	1,293,641
2011	2,397,840	1,055,048	1,041,436	98.7	1,356,404
2012	2,464,874	1,124,314	1,107,823	98.5	1,357,051
2013	2,702,929	1,570,860	1,548,908	98.6	1,154,021
2014	2,827,007	1,452,242	1,434,783	98.8	1,392,224
2015	2,931,193	1,505,622	1,484,563	98.6	1,446,630
2016	3,044,761	1,574,017	1,554,014	98.7	1,490,747
2017	3,197,310	1,666,513	1,643,182	98.6	1,554,128
2018	3,340,699	1,757,412	1,729,505	98.4	1,611,194
2019	3,457,029	2,033,794	2,003,225	98.5	1,453,804
2020	3,773,588	2,290,219	2,253,575	98.4	1,520,01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1] 현금영수증가맹점 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추이

(단위: 천개)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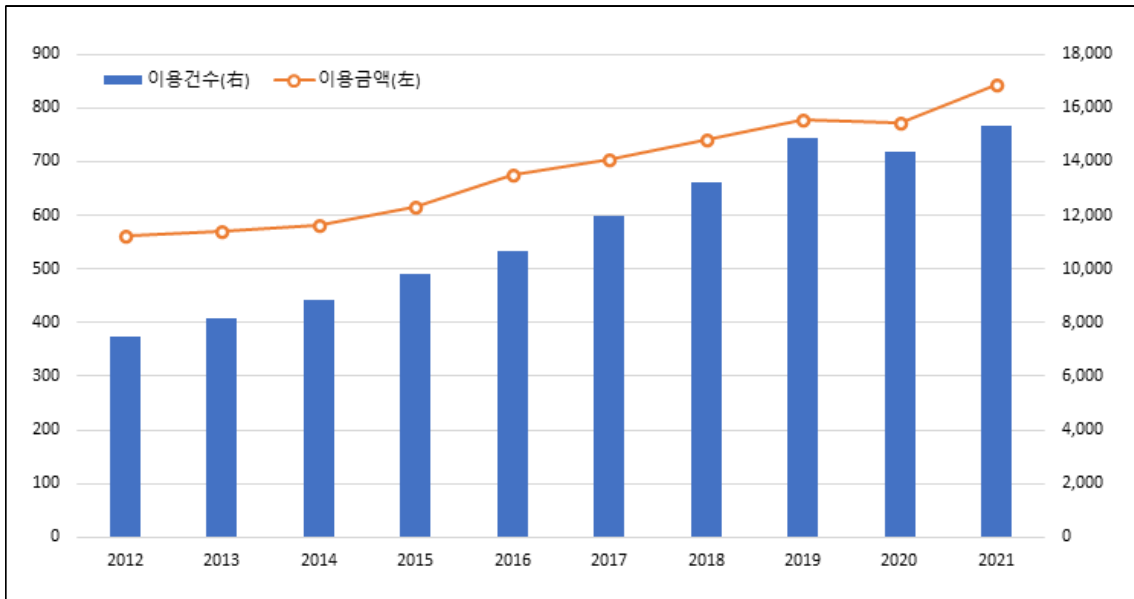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신용카드 및 기타 전자결제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금결제는 여전히 확대될 여력이 있어 보이며, 이는 현금거래에 대한 포착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함
 -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활용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이용량(금액, 건수 모두)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COVID-19에 의한 소비 위축의 결과로 보이며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볼 때 신용카드의 활용은 갈수록 확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그림 III-2] 참조)
 - 그렇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활용도가 높아짐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비율이 0.15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그림 III-3] 참조)
 - 이러한 흐름은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결제수단 간의 활용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함
 - 또한, 전자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결제대행 서비스로 현금결제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현금결제 확산에 기여함
 - 전자지급결제대행은 <표 III-2>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신용카드 및 현금(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를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서비스임

[그림 III-2] 신용카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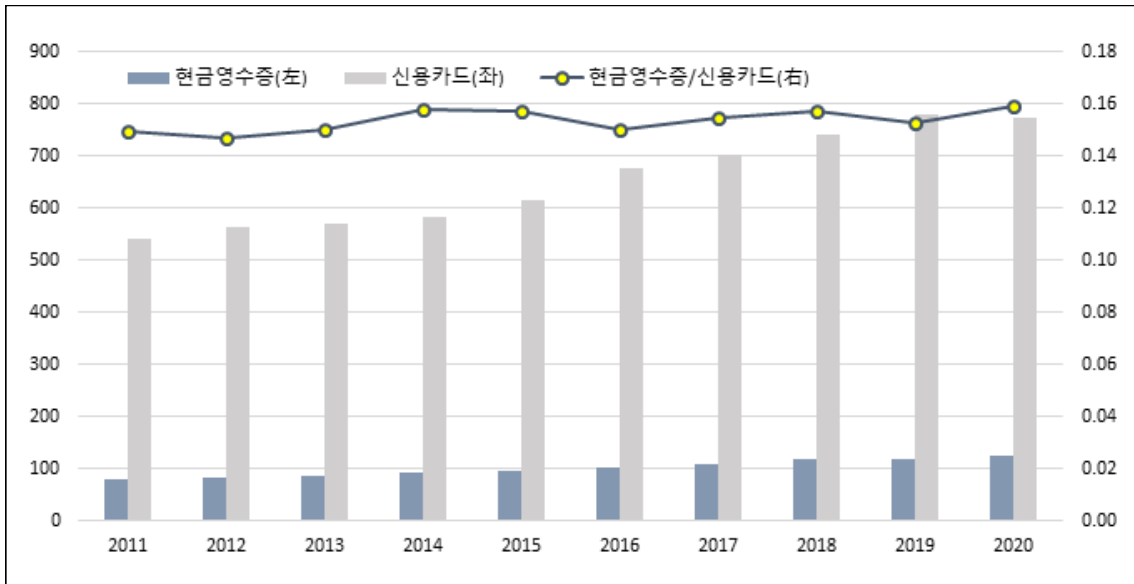
(단위: 백만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3]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추이

(단위: 조원(좌측))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 및 국세청(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2019	2020(A)	2021(B)	증감(B-A) ¹⁾
■ 이용건수	1,130.2	1,677.8	2,172.0	494.2 (29.5)
신용카드 ²⁾	919.7	1,371.4	1,786.1	414.7 (30.2)
가상계좌 ³⁾	62.5	67.1	68.0	0.9 (1.3)
계좌이체	53.6	97.4	149.3	51.9 (53.3)
기 타 ⁴⁾	94.5	141.9	168.5	26.6 (18.7)
■ 이용금액	5,316.8	7,066.6	9,048.1	1,981.5 (28.0)
신용카드 ²⁾	4,233.4	5,802.7	7,444.7	1,642.0 (28.3)
가상계좌 ³⁾	633.3	674.6	825.8	151.2 (22.4)
계좌이체	269.5	420.4	574.3	153.9 (36.6)
기 타 ⁴⁾	180.6	168.9	203.3	34.4 (20.4)

주: 2019~20년 수치는 일부 회사의 자료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조정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체크카드 포함

3) 구매자별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결제대행방식

4) 상품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행방식

자료: 한국은행(2022)

□ 참고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별개의 개념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으나 두 서비스 모두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하기보다는 실물결제 대신 온라인상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임

○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임(한국은행, 2022)

○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이후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와는 별개의 개념임(한국은행, 2022)

○ 두 서비스 개념 모두 신용카드와 현금을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는 수단이며, 각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액의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임

<표 III-3>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만건, 억원)

	2019	2020(A)	2021(B)	증감(B-A) ¹⁾
■이용건수	1,007.3	1,453.9	1,981.2	527.3 (36.3)
전자금융업자	424.4	747.5	1,123.7	376.2 (50.3)
(신용카드 ²⁾)	219.7	378.9	562.6	183.7 (48.5)
(선 불)	177.0	325.0	496.4	171.4 (52.7)
(계 좌)	27.8	43.5	64.8	21.3 (49.0)
휴대폰제조사	385.8	447.6	554.2	106.6 (23.8)
금융회사	197.1	258.8	303.2	44.4 (17.2)
■이용금액	3,171.0	4,491.6	6,065.4	1,573.8 (35.0)
전자금융업자	1,199.0	2,052.4	3,013.5	961.1 (46.8)
(신용카드 ²⁾)	855.4	1,353.3	1,939.6	586.3 (43.3)
(선 불)	244.7	568.0	884.9	316.9 (55.8)
(계 좌)	98.9	131.1	189.0	57.9 (44.2)
휴대폰제조사	898.5	1,070.4	1,376.2	305.8 (28.6)
금융회사	1,073.5	1,368.8	1,675.7	306.9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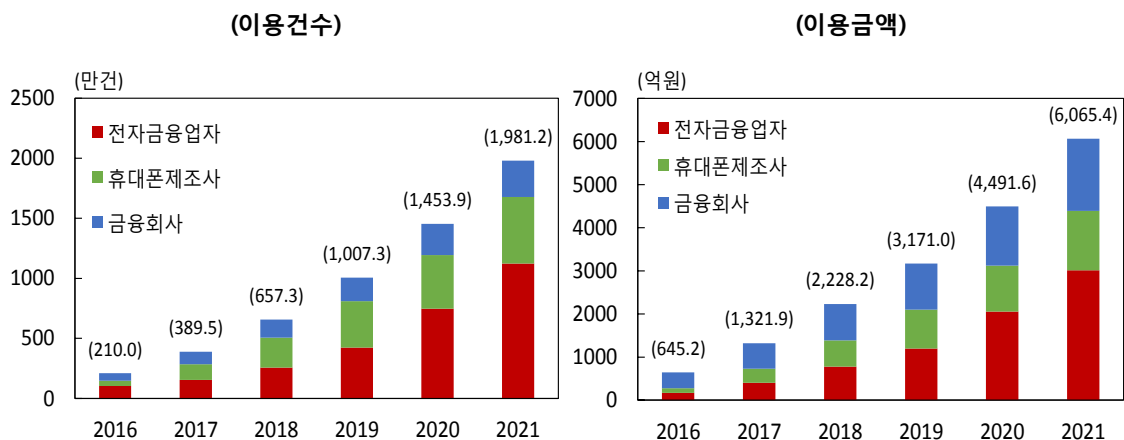
주: 2019~2020년 수치는 일부 회사의 자료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조정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체크카드 포함

자료: 한국은행(2022)

[그림 III-4]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추이



주: () 안은 전체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자료: 한국은행(2022)

- 현금영수증 발급 및 결제수단별 실적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자료를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동 제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동 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국 최근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은 발급건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임
 - 이는 소비자가 소액결제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 소액 현금결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함
 - 전자결제 등의 온라인 결제방식은 현금결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현금결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함
 -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온라인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 동 제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동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2. 정책수단의 적절성

가. 지원대상의 적절성

- 동 제도의 지원대상은 크게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발급건수에 따라 소득세를 세액공제함(대한민국 정부, 2021)
-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은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동 제도와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지원이 없을 경우 발급사업에서는 비용만 발생하게 됨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중개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VAN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까지 제공해 주는 상황임

-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연결하여 거래승인 및 중계, 전표매입 등 가맹점과 카드사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의미함³¹⁾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임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참조)
 -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입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만 발생하는 구조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3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략 ...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따라서 동 제도를 통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실비보전의 성격이 강함
 -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을 자발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길 경우, 수익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만약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만 강제한다면,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수요를 높이는 등의 우회수단을 통해 해당 사업으로부터의 손실을 줄이려 할 것임
 - 이러한 발급사업의 구조상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1) VAN 서비스의 설명은 KIS 정보통신 홈페이지(http://www.kisvan.co.kr/sub01_02_01.html)의 내용을 인용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보전되어야 해당 사업을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수행할 수 있음
- 한편, 동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3년 12월이지만, 동 제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은 2007년 말임
- 2007년 12월 31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추가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기준도 기존 건당 5,000원 이상에서 건당 1원 이상으로 조정됨
 -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현금영수증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원은 소액거래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판단됨(정다운·강동익, 2020, p. 83)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발급의무만 가짐(아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1조, 제3조 참조), 특히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³²⁾
- 그러나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처럼 실비보전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함
-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기존 5천원 이상의 거래에서 1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확대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
 -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일반화되고 안정될수록 가맹점 지원의 당위성은 약화될 것임
 - 그 대신 소액거래에 대하여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영업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추가적인 번거로움이 요구되는 사항임
 - 5,000원 이상의 거래뿐 아니라 1원 이상의 사실상 모든 거래에서 소비자의

32)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에서 확인함

요구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가 빈번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하나의 단계가 추가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로 미루어 볼 때,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1원 이상의 사실상 모든 거래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점의 절차적인 번거로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내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결제 절차의 추가로 인한 가맹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됨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21-11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중략 ...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 참고로, 전국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2020년 기준으로 가입지정자 가입자와 가입의무 외 가입자가 총 377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음(<표 III-4> 참조)
- 서울(21.1%)과 경기(24.3%)에 전국 가맹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가 분포하고 있음
- 가입지정자는 거의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지정자이면서 가입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됨
- 현금영수증 가입지정자는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②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③ 현금영수증가맹 의무업종 등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지정됨³³⁾
- 전체 가입자 중 40% 가량이 가입의무가 없지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가입하고 있음

33) 현금영수증가맹 의무대상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II장에서 설명함

〈표 III-4〉 지역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2020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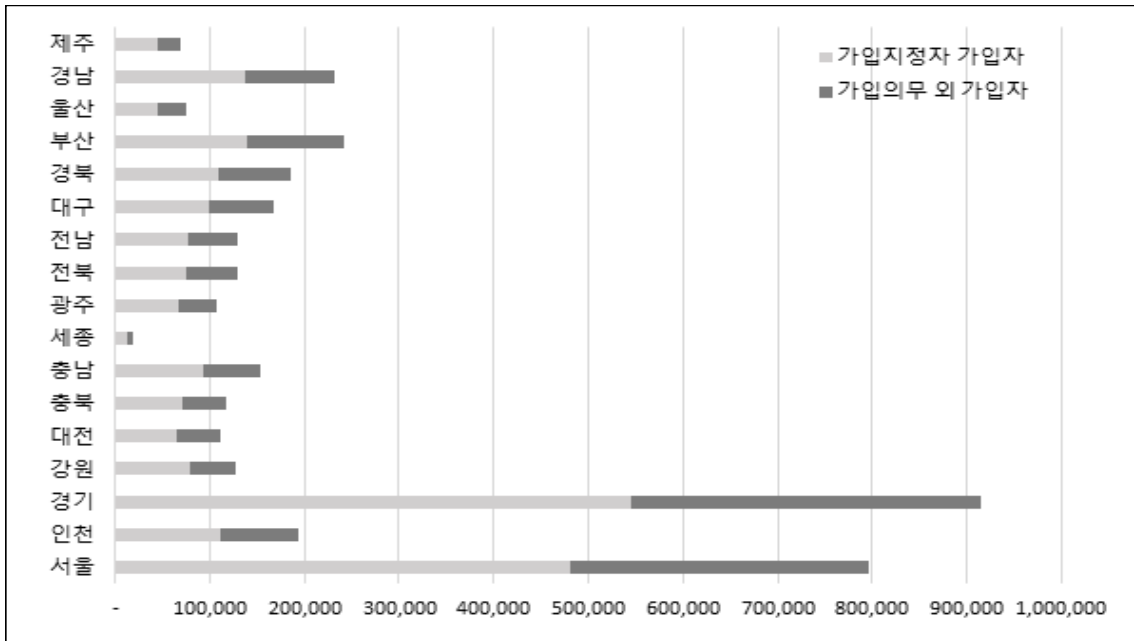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가입자 수	가입지정자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지정자 가입비율	가입의무 외 가입자	가입의무 외 가입자 비중
서울	797,271 (21.1)	488,669	480,118	98.3	317,153	39.8
인천	194,609 (5.2)	113,549	111,788	98.4	82,821	42.6
경기	915,911 (24.3)	555,620	545,342	98.2	370,569	40.5
강원	128,274 (3.4)	80,855	79,602	98.5	48,672	37.9
대전	111,493 (3.0)	66,137	65,377	98.9	46,116	41.4
충북	117,229 (3.1)	71,385	70,422	98.7	46,807	39.9
충남	152,762 (4.0)	94,258	93,080	98.8	59,682	39.1
세종	19,505 (0.5)	12,956	12,665	97.8	6,840	35.1
광주	107,026 (2.8)	67,828	66,709	98.4	40,317	37.7
전북	129,432 (3.4)	76,600	75,575	98.7	53,857	41.6
전남	129,311 (3.4)	79,309	78,001	98.4	51,310	39.7
대구	167,640 (4.4)	101,360	99,891	98.6	67,749	40.4
경북	186,205 (4.9)	110,553	109,061	98.7	77,144	41.4
부산	241,728 (6.4)	141,750	139,695	98.6	102,033	42.2
울산	74,302 (2.0)	45,087	44,569	98.9	29,733	40.0
경남	231,420 (6.1)	139,088	137,211	98.7	94,209	40.7
제주	69,470 (1.8)	45,215	44,469	98.4	25,001	36.0
총계	3,773,588 (100.0)	2,290,219	2,253,575	98.4	1,520,013	40.3

주: 광역시도별 전체가입자 수 옆 괄호 속의 값은 전국에서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3059462/fileData.do>)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III-5] 지역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분포

(단위: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특성별로 발급실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기간별 가맹점의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오래되거나 대표자의 연령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건당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표 III-5>, <표 III-6> 참조)
 - 전체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당 금액은 약 3만원 정도(29,776원)임
 - 사업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7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발급건당 금액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총 발급금액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가맹점의 대표자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대표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건당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연령대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체 발급금액의 90%에 육박(89.4%)하고 있음
 -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세부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하겠으나, 현재의 자료를 미루어볼 때 대표자의 연령이 낮거나 업력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소매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현금거래의 건당규모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5> 사업기간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구분	건수(천건)		금액(백만원)		건당 금액(원)
소계	4,132,409	(100.0)	123,044,773	(100.0)	29,776
1년 미만	166,164	(4.0)	4,185,359	(3.4)	25,188
1년 이상	675,664	(16.4)	17,784,011	(14.5)	26,321
3년 이상	597,592	(14.5)	15,087,339	(12.3)	25,247
5년 이상	417,853	(10.1)	11,849,423	(9.6)	28,358
7년 이상	648,742	(15.7)	19,361,584	(15.7)	29,845
10년 이상	434,028	(10.5)	15,722,072	(12.8)	36,224
15년 이상	1,192,366	(28.9)	39,054,984	(31.7)	32,754

주: () 안의 값은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국세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6> 대표자 연령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구분	건수(천건)		금액(백만원)		건당 금액(원)
소계	4,132,409	(100.0)	123,044,773	(100.0)	29,776
20세 미만	73	(0.0)	1,731	(0.0)	23,712
20세 이상	72,083	(1.7)	1,097,114	(0.9)	15,220
30세 이상	432,000	(10.5)	10,967,354	(8.9)	25,387
40세 이상	895,791	(21.7)	27,689,353	(22.5)	30,911
50세 이상	1,649,540	(39.9)	46,830,610	(38.1)	28,390
60세 이상	1,076,709	(26.1)	35,467,147	(28.8)	32,940
기타	6,215	(0.2)	991,463	(0.8)	159,527

주: () 안의 값은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국세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별로는 휴대폰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그 뒤로 주민등록 번호의 활용이 많았으며, 발급목적은 거의 대부분 소득공제를 위한 것이었음(<표 III-7>, <표 III-8> 참조)
 - 발급수단별로는 휴대폰에서의 발급건수가 86.3%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장(오프라인) 거래에서 거의 대부분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발급용도는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구분되며, 현금거래가 주로 소매거래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하면 소득공제가 거의 대부분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임

- 소득공제용 발급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받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짐
- 지출증빙용 발급은 사업자가 사업의 경비로 지출한 것임을 적격증빙 수단으로,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 비용처리(「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의 대상이 됨

<표 III-7> 발급수단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구분	건수(천건)		금액(백만원)		건당 금액(원)
소계	4,132,409	(100.0)	123,044,773	(100.0)	29,776
핸드폰	3,566,674	(86.3)	85,509,901	(69.5)	23,975
전용카드	36,473	(0.9)	1,163,263	(0.9)	31,894
기타카드	8,992	(0.2)	411,510	(0.3)	45,764
주민등록번호	326,113	(7.9)	25,814,404	(21.0)	79,158
사업자등록번호	194,158	(4.7)	10,145,695	(8.2)	52,255

주: () 안의 값은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국세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8> 발급용도별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현황(2020년 기준)

구분	건수(천건)		금액(백만원)		건당 금액(원)
소계	4,132,409	(100.0)	123,044,773	(100.0)	29,776
소득공제용	3,913,736	(94.7)	111,227,469	(90.4)	28,420
지출증빙용	218,673	(5.3)	11,817,304	(9.6)	54,041

주: () 안의 값은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국세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지원방식의 적절성

- 동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따라 건당 공제금액만큼 곱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발급건당 8.4~9.4원씩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건당 공제금액은 종이 발급 시 건당 9.4원, 종이 미발급 시 건당 8.4원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발급건당 20원씩 소득세 세액을 공제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이 해당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하여 대상이 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발행건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건당 공제 방식의 지원은 적절한 구조로 평가됨
 - 특히,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에서 별도의 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실비보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구조와 지원방식을 매칭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실적(손익)과는 무관하게 모든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하여 건당 정액으로 지원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 제도의 지원구조는 적절함
 -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 등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실비보전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한시적인 제도 운영보다는 본법(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함
 -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 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제도는 계속 유지될 제도라는 점에서 비용 발생은 지속될 것이며, 그렇다면 해당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도 본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하는 가맹점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존재함
 -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 가맹점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게 됨

- 가맹점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해야만 동 제도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됨
- 현금영수증 발행과정은 가맹점의 손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짐에 반해 동 제도의 지원여부는 가맹점의 손익에 따라 결정되기에 이러한 지원대상 행위와 지원방식 간의 미스매치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가맹점에 대해서는 후술할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도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에서는 소득세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한 측면이 있음
-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동 제도 간의 보완적 성격과 중복적 성격에 대한 것은 제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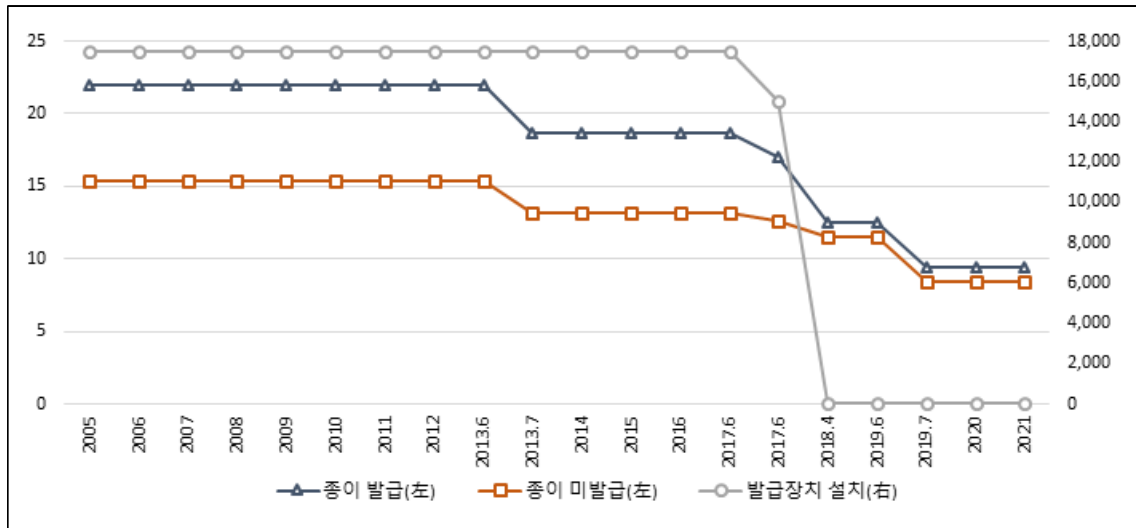
다. 지원수준의 적정성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단가는 크게 발급장치와 결제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6월 한 차례 단가를 인하하였고, 2018년 4월부터는 지원을 폐지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 결제건당 세액공제 단가는 다시 종이를 발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는 동 제도가 시행된 2005년 1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건당 공제단가를 낮추었음
 - 가장 최근 건당 공제단가가 조정된 것은 2019년 7월이며, 최근 건당 공제단가가 조정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정 단가의 검토를 고려할 여지는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가 유지된 기간은 각각 8년 5개월(2005년 1월~2013년 6월), 4년(2013년 7월~2017년 6월), 9개월(2017년 6월~2018년 3월), 1년 4개월(2018년 4월~2019년 6월)이었음
 - 최근 2회의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단가가 유지된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임

- 마지막으로 단가를 조정한 것이 2019년 7월이라는 점에서 3년여의 시간 동안 단가가 유지되었으나, 이 기간에는 코로나(COVID-19) 팬데믹도 진행되어 굳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낮았다고도 볼 수 있음
- 본 심층평가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적정 세액공제 단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지류영수증을 발급할 때와 미발급할 때의 차액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분석을 진행함
 - 본 심층평가에서 36개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의 2016~2020년 기초자료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들이 업계의 전수는 아니며 대표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어려움
 - 단적으로 해당 36개 사업자들의 2016~2020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는 동 기간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대비 41.1~44.8% 수준이었기에 나머지 절반 이상의 결제실적을 가진 사업자들의 비용정보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에 대하여 속단하기 어려움
 -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2020년 까지의 자료로는 현재 업계의 비용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세액공제 단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수에 가까운 사업자들의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받아 본 심층평가와 별도로 비용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다만,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종이발급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단가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최근의 물가흐름을 감안하여 간접적으로 검토함
- 종이발급 여부에 따른 결제건당 세액공제 단가의 차이는 도입 초기에 6.6원에서 현재 1원까지 좁혀진 상황임
 - 단가를 조정하면서 종이발급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단가의 격차도 크게 좁혀짐 ([그림 III-6] 참조)
 - 매 공제단가 조정과정 이후 종이발급 여부에 따른 단가의 격차는 1차 단가 조정 당시(2013년 6월)에 5.5원, 2차(2017년 6월) 4.4원, 3차(2018년 3월) 1원으로 바뀜

[그림 III-6]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변천

(단위: 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자료를 정리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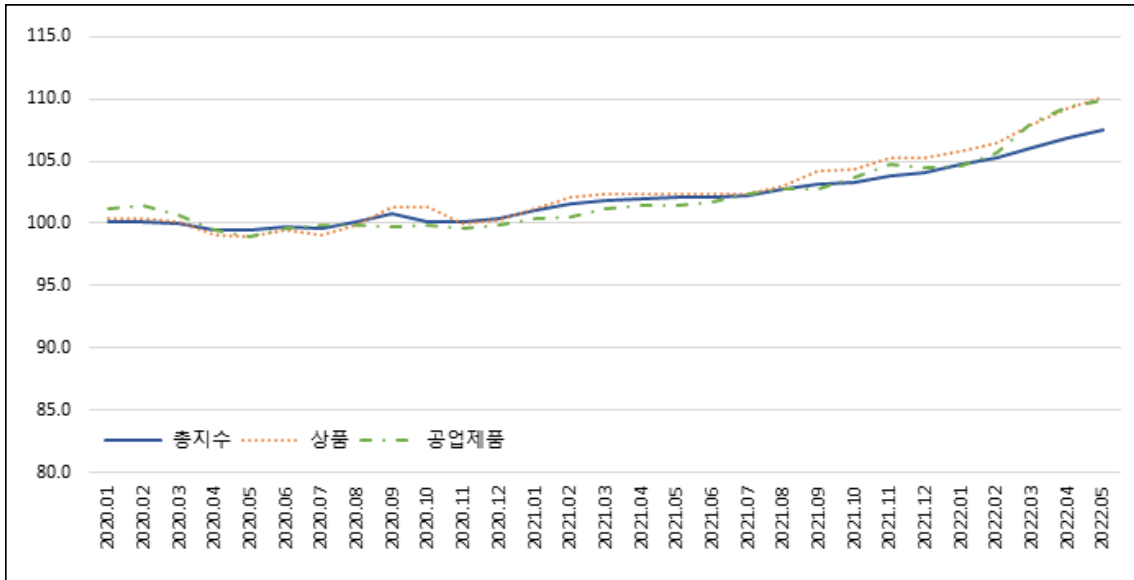
- 종이발급 여부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 차이는 지류 구입비용(전표비용)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임
 - 지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이 전자영수증 발급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영수증을 인쇄할 지류와 단말기, 가맹점 회선 등에서 발생함
 - 단말기 관리비용이나 가맹점 회선비는 신용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서 공유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종이발급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식별하기 어려움
 - 설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단말기와 가맹점 회선은 신용카드결제를 위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항목들임
 -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함으로써 단말기 관리 횟수가 보다 빈번해질 수 있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비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반면, 지류에 의한 비용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할 때 발급건수에 따라 비례적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 현재 공개된 객관적인 현금영수증 지류의 단가통계가 없으므로 영수증 지류와 유사성 내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물가항목들을 이용하여 최근의 가격흐름을 유추함
 - 이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위 산업 혹은 상품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봄

- 동 제도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단가를 조정한 2019년 7월 이후의 가격흐름을 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물가지수를 살펴봄

[그림 III-7]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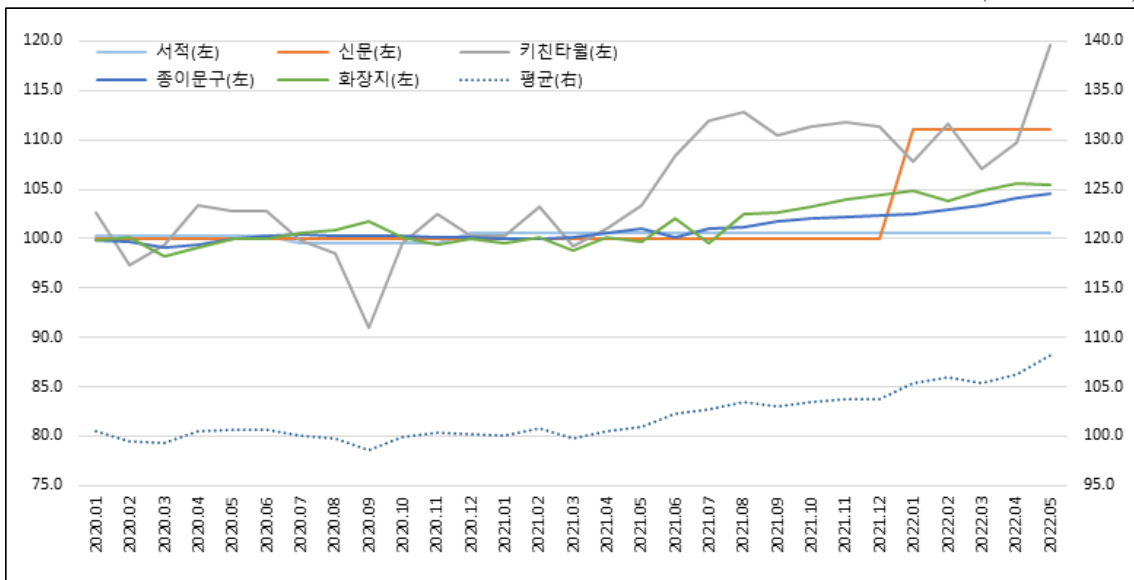
(2020년 = 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0002&conn_path=I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8] 월별 소비자물가지수(종이 영수증 관련 품목) 추이

(2020년 = 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0112&conn_path=I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물가지수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총지수와 상품지수 그리고 공업제품지수가 점차 지류 제품에 가까워지면서 부문 범위를 좁힐수록 물가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음([그림 III-7] 참조)
 - 또한,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물가지수 중 영수증 지류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5개 품목의 각 품목별 지수와 지수 평균치를 살펴봐도 2021년 하반기부터의 가격인상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8] 참조)
 - 품목 중 종이가 주요 재료인 항목을 선별한 결과, 서적, 신문, 키친타월, 종이문구, 화장지 등 5개 품목을 선택함
 - 5개 품목 중 서적을 제외한 4개 품목에서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수의 상승이 확인됨(서적은 2020년 12월부터 물가지수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시장여건이 종이발급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단가의 격차를 더 줄여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종이류 품목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
 - 단말기 관리비용과 회선비 중 설비상의 비용은 최근 1~2년 사이에 크게 절감될 요소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단말기 관리비용 중 인건비 항목은 변화될 여지가 있음
 - 인건비는 동일한 수의 관리인력을 고용할 경우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1인당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인력 수를 줄일 경우 비용 하락도 가능함
 - 설령 종이류의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체 구조조정으로 종이발급 건당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 제도의 세액공제 단가를 지금 더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지류영수증 발급에 공통적인 재료인 종이의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단가 격차를 더 줄이는 것은 인건비 절감 등의 추가대응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 국민경제의 위태로운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그리 적절한 시기로 판단되지 않으며, 다음 심층평가 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공제단가는 과세특례가 도입된 2007년 말부터 지금까지 건당 2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러한 지원수준을 지원의 성격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함
 - 공제적용 거래를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 중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 ‘나. 지원방식의 적절성’에서도 다루었지만 전화망을 사용하는 모든 거래가 아닌 소액결제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화망 사용비용에 대한 보전의 역할은 부분적임
 - 물론 전화망 사용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실비의 보전으로 볼 부분도 있겠으나, 5천원 미만의 거래는 전체의 약 40%(2020년 기준) 수준이기에 실비 보전의 관점에서 공제단가를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일 가능성이 높음

〈표 III-9〉 소액 현금결제에 대한 발급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

발급금액별	0~1천원 (A)	1천~3천원 (B)	3천~5천원 (C)	5천원 미만 (D=A+B+C)	전체 (E)	5천원 미만 비중 (F=D/E×100)
2010	420	1,531	679	2,630	4,952	53.1
2011	417	1,654	718	2,790	5,187	53.8
2012	406	1,702	734	2,841	5,257	54.0
2013	380	1,688	748	2,816	5,227	53.9
2014	359	1,649	726	2,733	5,193	52.6
2015	357	1,236	1,002	2,595	5,046	51.4
2016	359	1,222	997	2,578	5,025	51.3
2017	337	1,158	935	2,430	4,793	50.7
2018	319	1,044	857	2,220	4,531	49.0
2019	362	980	796	2,138	4,509	47.4
2020	258	756	656	1,670	4,132	4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서도 공제단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 첫째, 해당 지원이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제도의 도입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정착수준을 검토하여 그 수준에 따라 공제단가를 조정할 여지를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만약 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소액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전화망 사용에 따른 비용과 전화망 사용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현금영수증의 발급 양상으로 볼 때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정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건당 평균발급금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표 II-9>, [그림 II-4] 참조)
 - 또한,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III-9] 참조)
 - 소액결제를 0~1천원, 1천~3천원, 3천원~5천원으로 구분하여 보아도 2015년 이후 모든 금액구간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III-10] 참조)
 - 이러한 10여 년간의 현황자료 양상은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음
 - 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제도 도입 초기의 번거로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면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수준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소액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승인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 정황상 해당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하여 가맹점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제한함
 -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망 사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한 상황임
 -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화망을 통한 발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³⁴⁾
 - 다만,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화망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실적과 발급비용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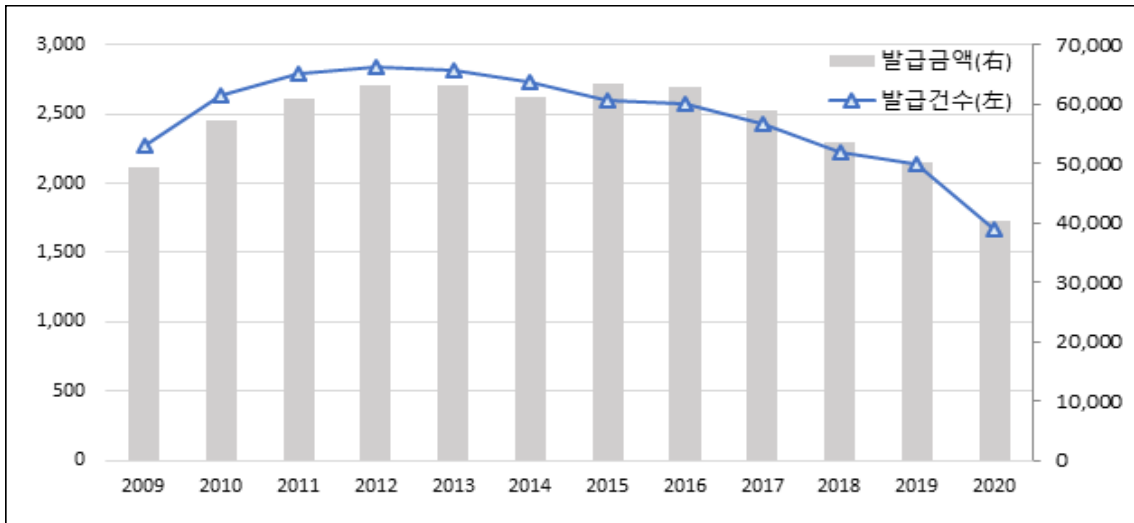
- 따라서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공제단가는 두 가지 검토 방향 중 어느 이유에서라도 적정 공제단가를 검토할 여지는 존재함

34) 해당 내용은 2022년 5월 20일에 실시한 현금영수증사업자 업계에 대한 FGI에서 확인함

-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안정화 측면에서나 전화망을 사용한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발급비용의 보전 측면 모두에서 현재의 지원수준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화망으로 발급승인을 받은 것으로 세액공제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가맹점에 대한 적정 공제단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사업자에 대한 공제단가와 함께 세부자료를 제공받아 별도의 비용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림 III-9] 5천원 미만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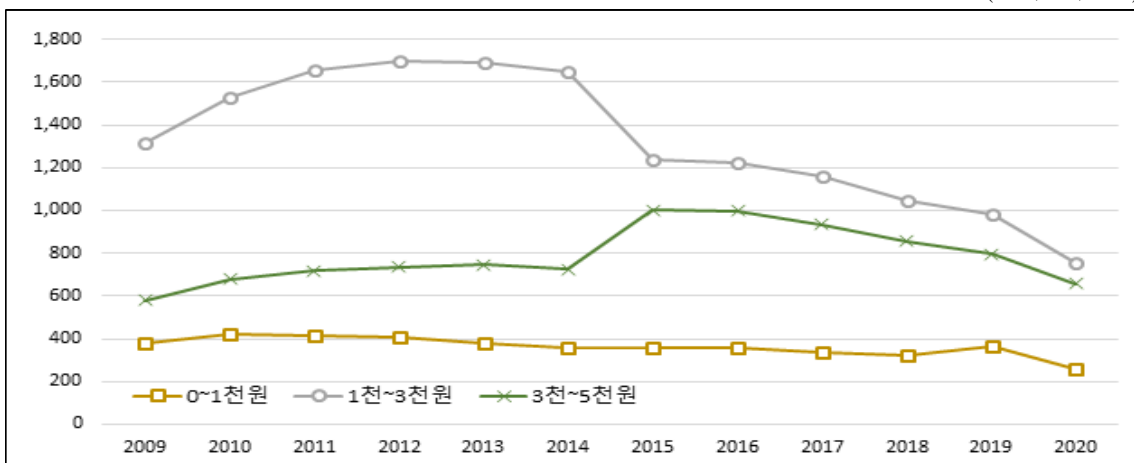
(단위: 백만건,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10] 소액결제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추이

(단위: 백만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 동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유사성이 존재함
 - 두 제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실적에 따른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 공제세목과 공제방식에서는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음
 - (공제세목) 동 제도는 가맹점의 소득세를 공제하지만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 (공제방식) 동 제도는 발행건당 정액(20원)으로 세액공제를 하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발행금액에 비례하여(발행금액의 1.3%) 납부세액을 공제함
 - 두 제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지원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행위에 대하여 발급실적과 연동된 방식으로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제도 간 유사성은 존재함
 - 다만, 동 제도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수준을 합산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한지(중복성)에 대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한 별도의 비용평가를 진행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동 제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여부 내지 재설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삭제하였던 일몰기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서술한 것처럼 지원방식, 지원수준,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추세,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제도 유지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기준으로 조세지출 실적이 2조 3,473억원으로 이에 비해 동 제도의 가맹점 지원실적(2020년 54억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대한민국정부, 2022)
 - 제도 활용수준이나 지원범위 등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동 제도를 통한 것보다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의 제도 여건은 비록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전환으로 COVID-19의 양상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적으로 악화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회복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가맹점 지원의 축소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우선은 일몰기한을 되살리고 기한 도래 시 재평가를 통해 해당 지원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도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 제도와 관련은 있으나 수혜대상과 지원내용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동 제도와 유사중복성은 없다고 평가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소비자(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동 제도와 수혜대상이 중복되지 않음
 - 동 제도는 현금거래 당사자 중 판매자에 대한 지원제도라면 해당 제도는 당사자 중 소비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현금거래의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소결

- 본 장에서는 동 제도의 타당성을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의 측면에서 검토함
- 동 제도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정책 없이 사업자들의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유인이 없음
 - 또한, 동 제도는 제도 운영목표와 최종정책목표 간의 인과성이 명확하며 그 필요성도 인정됨
 - 동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세제지원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만히 이루어

어지도록 유도(1차적 목표)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나아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궁극적 목표)하고자 함

□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의 구조적 설계는 대체로 정책목표와 일관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함

○ 동 제도가 현금영수증 발급비용의 지불주체인 현금영수증사업자와 소액거래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해야 할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함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수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동 제도는 실비보상적 지원이며 현금영수증 제도를 계속하는 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될수록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그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은 발행건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동 제도의 지원방식이 건당 공제하는 것은 타당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실비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도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에 비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목을 공제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 같은 관점에서 가맹점에 대하여 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존재함

○ 동 제도의 지원수준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나 당장의 조정보다는 보다 엄밀한 비용평가 분석과 함께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와 관련된 제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며, 이 중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유사성이 인정됨

○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제도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와 지원대상이 동일하며, 지원방식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비례적으로 세액공제를 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제도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원 수준이나 지원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각각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운영비용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행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조세특례의 지원단가가 적정하고 제도에 규정된 대로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된다면 그 자체로 제도의 효과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가 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 일부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조사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성이 떨어짐
 - 세액공제 지원 단가 조정을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단가변화가 외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 지원 단가는 사업자의 원가비용 인하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원 단가 변화가 사업자나 가맹점 등의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1) 일차적으로 본 제도를 포함한 현금영수증제도 전체의 효과성을 검증
 - 2) 세액공제 단가 변화가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1.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비용 - 편익 분석³⁵⁾

- 본 소절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세지출(비용) 대비 과표양성화 효과(편익)를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가정하에 편익과 비용을 추정
 -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고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보완
 -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질문과 응답,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지출 규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비용과 편익 추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특정 소득구간의 과소표집 문제 등 일반적인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정된 비용과 편익은 실제 값들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음
 - 편익: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소득탈루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확보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입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판매자가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득탈루로 이어질 수 있음
 -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러한 소득탈루 가능성은 줄고 새롭게 세원이 확보됨
 -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확보되는 세원을 편익으로 평가
 - 비용: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다음의 직·간접적인 조세지출의 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³⁶⁾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³⁷⁾

35) 본 연구의 비용-편익은 이태석 외(2017)와 정다운·강동익(2020)에서 이용한 방법론을 수정·보완한 방법론으로 추정

3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거래 등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

-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행정 비용, 납세 협력 비용 등은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고려하지 못함

가. 편익 추정

- 편익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을 추정
- 먼저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은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액에 근로소득자 수를 곱하여 계산
 -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액은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조사 자료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평균하여 계산
 - 근로소득자 수는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조사 자료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수로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없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소득탈루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산됨
 - 하지만 현금영수증제도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하여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 즉, 현금영수증제도가 없었다면 소득탈루 부분만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으로 간주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정다운·강동익(2020)의 방법론을 따라 소득탈루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을 계산
 - 소득탈루율은 신영임·강민지(2014)에서 추정된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20.8%를 적용
 - 이는 정다운·강동익(2020)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였으며, 다른 참고할 만한 최근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움

3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부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

□ 종합소득세 추가 세수입은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에 실효세율을 곱하여 계산 (<표 IV-1> 참고)

-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종합소득금액(과세소득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계산함
 - 이때 종합소득신고자 중 사업자만 고려해야 하므로 비사업자를 제외함
 - 그리고 최종소비자와 현금거래 가능성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에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간편장부대상자와 기준 및 단순경비율 신고자만을 고려한 실효세율도 계산하여 이용

<표 IV-1> 연도별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단위: 억원, %)

귀속 연도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세율	
	비사업자 제외	간편장부 및 경비율 신고자	비사업자 제외	간편장부 및 경비율 신고자	비사업자 제외	간편장부 및 경비율 신고자
2007	652,179	267,864	91,800	24,810	14.1	9.3
2008	733,509	309,932	97,571	26,471	13.3	8.5
2009	761,248	308,577	95,926	22,961	12.6	7.4
2010	1,844,372	331,186	238,751	24,981	12.9	7.5
2011	2,059,950	350,376	276,550	26,591	13.4	7.6
2012	2,261,159	370,042	303,476	28,843	13.4	7.8
2013	2,425,521	403,475	332,575	32,388	13.7	8.0
2014	2,652,752	440,646	377,350	33,734	14.2	7.7
2015	2,968,441	496,783	428,301	38,904	14.4	7.8
2016	3,247,603	550,405	471,546	44,626	14.5	8.1
2017	3,641,743	617,990	537,887	51,849	14.8	8.4
2018	3,888,687	671,507	575,921	55,923	14.8	8.3
2019	1,868,969	727,240	274,403	60,812	14.7	8.4

주: 실효세율 =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자료: 『국세통계연보』, 3-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총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입도 종합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에 실효세율을 곱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은 성명재(2012)의 추정 결과인 11.8%를 이용³⁸⁾

38)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인 10%보다 실효세율이 높게 추정된 것은 각종 면세 등에 따른 누적 및 환수 효과에 따른 것으로 설명됨

□ <표 IV-2>는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입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은 2007년에는 약 20조원, 2008년에서 2014년까지는 약 25조원 내외 수준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27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약 29조원 수준에 이룸
-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입 규모도 증가
 - 비사업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실효세율을 적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추가 세수입 추정액은 2007년 6,156억원에서 2019년 8,850억원으로 증가
 - 간편장부신고자와 기준 및 단순 경비율 신고자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실효세율을 적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추가 세수입 추정액은 2007년 4,061억원에서 2019년 5,057억원으로 증가
 -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입 추정액은 2007년 5,152억원에서 2019년 7,104억원으로 증가

<표 IV-2> 연도별 과세표준 양성화 및 추가 소득세 세입 추정 결과

(단위: 만원, 천명, 억원)

연도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사용액	근로소득자 수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 1 (비사업자 제외 실효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 2 (간편장부 및 경비율 신고자 실효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세입 추정액 (실효세율 11.8% 적용)
2007	160.5	13,076	209,910	6,156	4,061	5,152
2008	174.0	13,762	239,500	6,626	4,234	5,878
2009	167.3	14,403	240,929	6,314	3,708	5,913
2010	173.9	14,778	257,016	6,896	4,009	6,308
2011	159.2	15,343	244,309	6,809	3,862	5,996
2012	171.3	14,973	256,490	7,149	4,161	6,295
2013	155.8	15,564	242,486	6,910	4,035	5,952
2014	159.9	15,988	255,719	7,553	4,096	6,276
2015	167.3	16,726	279,804	8,381	4,540	6,868
2016	154.7	17,788	275,097	8,297	4,635	6,752
2017	162.7	18,148	295,226	9,088	5,158	7,246
2018	149.6	18,975	283,804	8,737	4,900	6,966
2019	149.9	19,312	289,433	8,850	5,057	7,104

주: 소득탈루율 20.8%를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자료와 <표 IV-1>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비용 추정

- 비용은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있는 조세지출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각각 추정하고 합산하여 계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현금영수증 이용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주어지므로 현금영수증 이용에 따른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해야 함
 -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해야 함
 - 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이용할 수 있음

1)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추정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액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조세지출 추정에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
 -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정보가 존재하여 이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과 조세지출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구간별로 근로소득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을 계산한 뒤(<표 IV-3>의 예시를 참고 바람), 이 비율을 근로소득에 적용하여 계산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³⁹⁾
 - 이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우선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산출⁴⁰⁾
 - 최종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추정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

39) 제도개요 및 자세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연도별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40) 이태석 외(2017)도 밝혔듯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됨

- 이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을 곱하여 추정
- 위의 과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금액을 추정한 결과는 <표 IV-4>에 정리함

<표 IV-3> 2019년 귀속 근로소득 대비 과세표준 비율(예시)

(단위: 억원, %)

과세대상근로소득 (총급여) 구간	과세대상근로소득 (총급여)	과세표준	과세대상근로소득 대비 과세표준 비율
1천만 이하	140,271	14,229	10.1
1.5천만 이하	179,569	48,343	26.9
2천만 이하	273,088	94,575	34.6
3천만 이하	1,061,820	450,709	42.4
4천만 이하	905,637	430,924	47.6
4.5천만 이하	402,862	201,134	49.9
5천만 이하	377,543	195,392	51.8
6천만 이하	668,163	365,789	54.7
8천만 이하	1,090,724	653,088	59.9
1억 이하	764,968	507,009	66.3
1억 초과	1,310,665	1,025,703	78.3

자료: 『국세통계연보』, 4-2-4, 2020.

<표 IV-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금액 추정 결과

<2008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000만원 이하	2,481	58	14,413	8	1,153
4,600만원 이하	2,009	103	20,625	17	3,506
8,800만원 이하	115	120	1,384	26	360
8,800만원 초과	7	178	127	35	44
합계			36,548		5,063

<표 IV-4>의 계속

<2009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787	56	15,645	6	939
4,600만원 이하	2,253	92	20,753	16	3,320
8,800만원 이하	88	95	830	25	208
8,800만원 초과	6	198	118	35	41
합계			37,346		4,508

<2010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580	53	13,780	6	827
4,600만원 이하	2,446	90	22,076	15	3,311
8,800만원 이하	107	111	1,186	24	285
8,800만원 초과	15	97	148	35	52
합계			37,190		4,475

<2011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513	50	12,588	6	755
4,600만원 이하	2,766	86	23,712	15	3,557
8,800만원 이하	244	82	2,002	24	480
8,800만원 초과	31	90	275	35	96
합계			38,578		4,889

<표 IV-4>의 계속

<2012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3,091	48	14,981	6	899
4,600만원 이하	2,188	100	21,929	15	3,289
8,800만원 이하	241	93	2,254	24	541
3억원 이하	28	91	257	35	90
3억원 초과	0	0	0	38	0
합계			39,421		4,819

<2013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835	66	18,679	6	1,121
4,600만원 이하	2,511	116	29,081	15	4,362
8,800만원 이하	274	139	3,796	24	911
3억원 이하	25	134	340	35	119
3억원 초과	0	0	0	38	0
합계			51,896		6,513

<2014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144	60	12,842	6	771
4,600만원 이하	3,170	114	36,133	15	5,420
8,800만원 이하	354	122	4,317	24	1,036
1억 5천만원 이하	85	133	1,133	35	396
1억 5천만원 초과	0	0	0	38	0
합계			54,424		7,623

<표 IV-4>의 계속

<2015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302	65	14,858	6	891
4,600만원 이하	3,485	109	37,948	15	5,692
8,800만원 이하	427	139	5,958	24	1,430
1억 5천만원 이하	47	143	669	35	234
1억 5천만원 초과	5	270	136	38	52
합계			59,569		8,299

<2016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366	55	13,079	6	785
4,600만원 이하	3,938	104	41,021	15	6,153
8,800만원 이하	487	125	6,065	24	1,456
1억 5천만원 이하	91	98	894	35	313
1억 5천만원 초과	7	180	118	38	45
합계			61,177		8,751

<2017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349	52	12,317	6	739
4,600만원 이하	4,101	106	43,365	15	6,505
8,800만원 이하	561	127	7,125	24	1,710
1억 5천만원 이하	92	135	1,243	35	435
5억원 이하	3	200	54	38	21
5억원 초과	0	0	0	40	0
합계			64,104		9,409

<표 IV-4>의 계속

<2018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773	51	14,209	6	853
4,600만원 이하	4,762	94	44,803	15	6,721
8,800만원 이하	537	110	5,929	24	1,423
1억 5천만원 이하	133	118	1,567	35	548
3억원 이하	6	63	39	38	15
5억원 이하	0	0	0	40	0
5억원 초과	0	0	0	42	0
합계			66,548		9,559

<2019년>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가중치 적용)	1인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한계 세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1,200만원 이하	2,870	52	14,878	7	1,041
4,600만원 이하	4,935	95	46,927	15	7,039
8,800만원 이하	460	130	5,972	24	1,433
1억 5천만원 이하	100	101	1,018	35	356
3억원 이하	0	0	0	38	0
5억원 이하	0	0	0	40	0
5억원 초과	0	0	0	42	0
합계			68,796		9,870

자료: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5>는 <표 IV-4>에서 연도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총액만을 정리하여 보여줌

- 조세지출금액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500억~5,000억원 수준이었다가 2013년 6,5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뒤, 꾸준하게 상승하여 2019년에는 9,870억원에 이룸
- 2013년의 급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승한 결과로 해석됨

- 2013년 이후 조세지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라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아진 영향 때문으로 추측됨

<표 IV-5> 연도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정액

(단위: 억원)

연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세지출금액
2008	5,063
2009	4,508
2010	4,475
2011	4,889
2012	4,819
2013	6,513
2014	7,623
2015	8,299
2016	8,751
2017	9,409
2018	9,559
2019	9,870

자료: <표 IV-4>의 내용을 정리

2)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추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에는 신용카드 이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추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지출에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의 비율만큼을 현금영수증에 의한 세액공제액으로 간주
 -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의 비율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
 - 그런데 간이과세자 중 종사업종이 음식·숙박업인 경우 공제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보다 두 배 높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에 의한 세액공제에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의 비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더함

- 이때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의 비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및 간이사업자 수 대비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수의 비율로 계산

□ <표 IV-6>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은 변동성이 다소 심하게 나타남
 - 조세지출금액은 2007년 1,282억원에서 2010년 1,932억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3년 1,450억원으로 감소하고, 이후 1,540억원에서 1,650억원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19년에는 2,170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 조세지출의 변동성이 심했던 것은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의 비율 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비율은 2007년 16.9%에서 2019년 9.2%로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신용카드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음을 시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의 전체 조세지출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

<표 IV-6>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추정액

(단위: 억원, %)

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공제(A)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비율(B)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비율(C)	조세지출금액 (E)=(A×B)(1+C)
2007	6,992	16.9	8.6	1,282
2008	8,451	15.6	7.8	1,420
2009	10,036	15.3	7.3	1,644
2010	12,325	14.7	6.8	1,932
2011	13,831	12.4	6.2	1,820
2012	14,405	12.3	5.9	1,883
2013	13,668	10.0	6.2	1,450
2014	13,888	10.9	6.1	1,602

<표 IV-6>의 계속

(단위: 억원, %)

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공제(A)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비율(B)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비율(C)	조세지출금액 (E)=(A×B)(1+C)
2015	14,188	10.3	5.8	1,540
2016	15,776	9.9	5.3	1,653
2017	16,271	9.6	4.8	1,633
2018	19,125	8.9	4.4	1,771
2019	22,570	9.2	4.2	2,170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9-8-1, 9-8-4,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금액

- 본 조세특례에 의한 조세지출금액은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실적치를 이용
 - 참고로 이 표는 <표 II-8>와 동일한 내용을 본 장에 다시 제시한 것임
 - 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금액은 2009년 1,19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9년에는 456억원에 이룸
 - 제II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세액공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조세지출의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로 인함

<표 IV-7>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득세	0.0	0.3	0.0	0.0	0.3	0.1	17	37	67	50	47
부가 가치세	1,191	924	1,085	1,121	999	676	655	699	660	563	456
소계	1,191	924.3	1,085	1,121	999.3	676.1	672	736	727	613	50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4) 관련 제도들의 조세지출금액 합산

- 본 소절에서 추정된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들의 조세지출을 합산한 결과는 <표 IV-8>에 정리함
 -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조세지출은 2009년 7,343억원에서 2019년 1조 2,543억원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동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기인
 - 2019년 기준 동 조세지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8.7% 수준
 - 그리고 동 조세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확인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09년 4,508억원에서 2019년 9,870억원으로 약 5,300억원 정도 증가
 - 이러한 증가폭은 전체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들의 조세지출 증가폭과 비슷한 규모

<표 IV-8>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의 조세지출금액(비용)

(단위: 억원)

연도	소득세(A)		부가가치세(B)		합계(A+B)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2009	4,508	0	1,644	1,191	7,343
2010	4,475	0.3	1,932	924	7,330
2011	4,889	0	1,820	1,085	7,794
2012	4,819	0	1,883	1,121	7,823
2013	6,513	0.3	1,450	999	8,962
2014	7,623	0.1	1,602	676	9,901
2015	8,299	17	1,540	655	10,511
2016	8,751	37	1,653	699	11,140
2017	9,409	67	1,633	660	11,770
2018	9,559	50	1,771	563	11,944
2019	9,870	47	2,170	456	12,543

자료: 본 소절의 추정결과들을 요약·정리

다. 비용-편익 분석

- 지금까지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비용 대비 편익의 비를 계산함
 - 편익 추정 시 두 가지 실효세율을 고려함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의 비도 두 가지로 제시
 - 비용 대비 편익의 비는 비용 1원당 편익의 가치를 의미
 - 즉, 비용 대비 편익이 1보다 크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큼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작음을 의미

- 비용 대비 편익 추정결과는 <표 IV-9>와 [그림 IV-1]에 제시됨
 - 비사업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한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은 2019년을 기준으로 1.27로 추정되어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하지만 간편장부 및 경비율 신고자만을 고려한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한 경우, 2019년 기준 비용 대비 편익은 0.97로 편익보다 비용이 약간 큰 것으로 추정됨

-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실효세율 적용방식에 상관없이 비용 대비 편익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임
 - 비용 대비 편익의 비는 2013년 급락
 - 이는 2013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어 조세지출(비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됨
 - 비용 대비 편익은 2013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2013년 이후 비용 증가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점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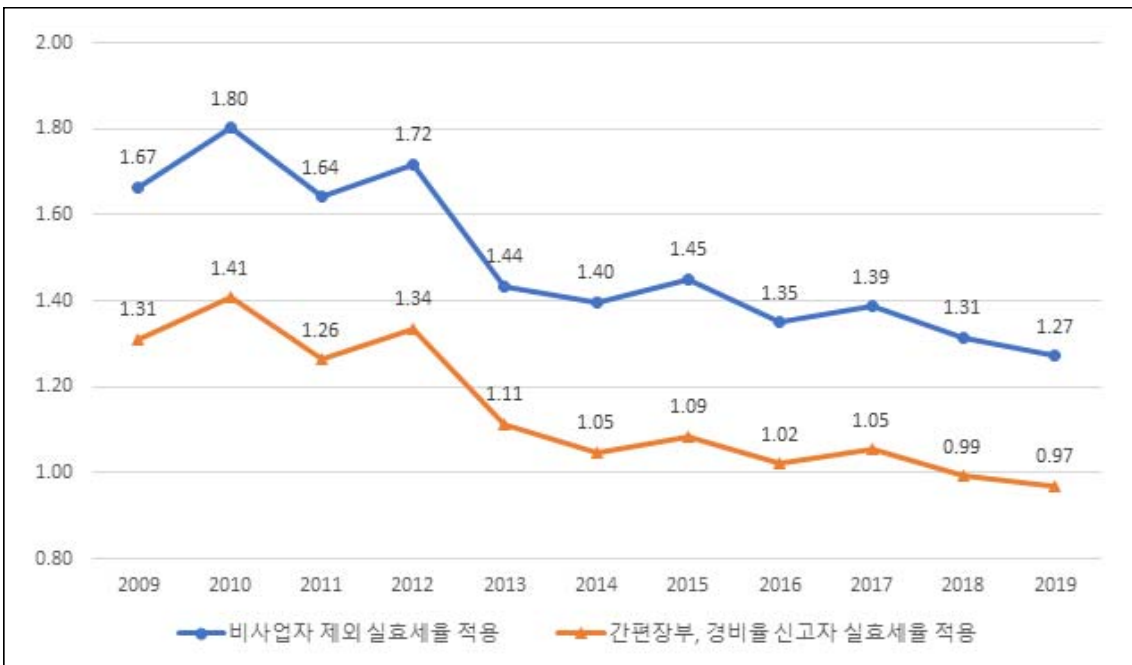
<표 IV-9> 연도별 비용-편익 추정 결과

(단위: 억원)

연도	비사업자 제외 실효세율 적용			간편장부 및 경비율 신고자 실효세율 적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2009	12,228	7,343	1.67	9,622	7,343	1.31
2010	13,204	7,330	1.80	10,318	7,330	1.41
2011	12,806	7,794	1.64	9,858	7,794	1.26
2012	13,444	7,823	1.72	10,457	7,823	1.34
2013	12,861	8,962	1.44	9,987	8,962	1.11
2014	13,829	9,901	1.40	10,372	9,901	1.05
2015	15,248	10,511	1.45	11,407	10,511	1.09
2016	15,049	11,140	1.35	11,387	11,140	1.02
2017	16,334	11,770	1.39	12,404	11,770	1.05
2018	15,702	11,944	1.31	11,865	11,944	0.99
2019	15,954	12,543	1.27	12,161	12,543	0.97

자료: 본 절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그림 IV-1] 연도별 비용-편익 추정 결과



자료: <표 IV-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본 연구의 비용-편익 분석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힘
 - 다양한 과표양성화의 노력으로 소득탈루율이 최근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실제 편익이 더 낮은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
 - 비용의 경우 조세지출뿐 아니라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도 고려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음
 - 「재정패널조사」는 설문조사이므로 응답 오류, 자료 결측 등의 한계점 존재
 - 그리고 편익과 비용의 계산은 상당히 강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하지만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현금영수증 제도의 비용-편익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판단
 - 즉, 비용 대비 편익이 감소하는 추세는 향후 지속되어 비용 대비 편익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의 과표양성화 노력으로 소득탈루율은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실상 편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비용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유지되는 한 감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⁴¹⁾

2. 세액공제 단가 조정의 효과성 분석

- 본 조세특례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운영비용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행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 단가가 적정하고 제도에 규정된 대로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된다면 그 자체로 제도의 효과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은 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이태석 외 2017; 정다운·강동익, 2020)

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장려하여 과표양성화 수준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31.6%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미인지 이유는 ‘알 기회가 없거나(42.6%)’, ‘5천원 미만 현금 거래가 많지 않아서(34.0%)’인 것으로 나타남⁴²⁾
 - 즉,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의 비용 보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동 제도가 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반사실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특히, 설문조사 대상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짐
 - 2017년 설문조사에서 수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17%가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감소시키겠다고 답함(이태석 외, 2017)
 - 2020년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현금영수증사업자의 60.0%가 세액공제 규모 축소 시 현금영수증 발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함(정다운·강동익, 2020)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인하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는 2013년 7월, 2017년 6월, 2018년 4월, 2019년 7월 인하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단가에는 변화가 없어 그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움
 - 유의할 점은 세액공제 지원 단가 조정은 실제 사업자들의 단가변화를 고려한 내생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
 - 즉, 단가조정을 이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식별하기는 어려움
 - 단, 단가 변화가 실제 시장에서의 비용인하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이슈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42) 정확하게는 전화망을 이용한 소액거래가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

- 아래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급수단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그 외 체크카드 등의 거래금액과 건수가 단가 변화가 이루어진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후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
 - 체크카드 등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IC카드, 직불카드를 의미함

<표 IV-10>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건수, 금액

(단위: 천건,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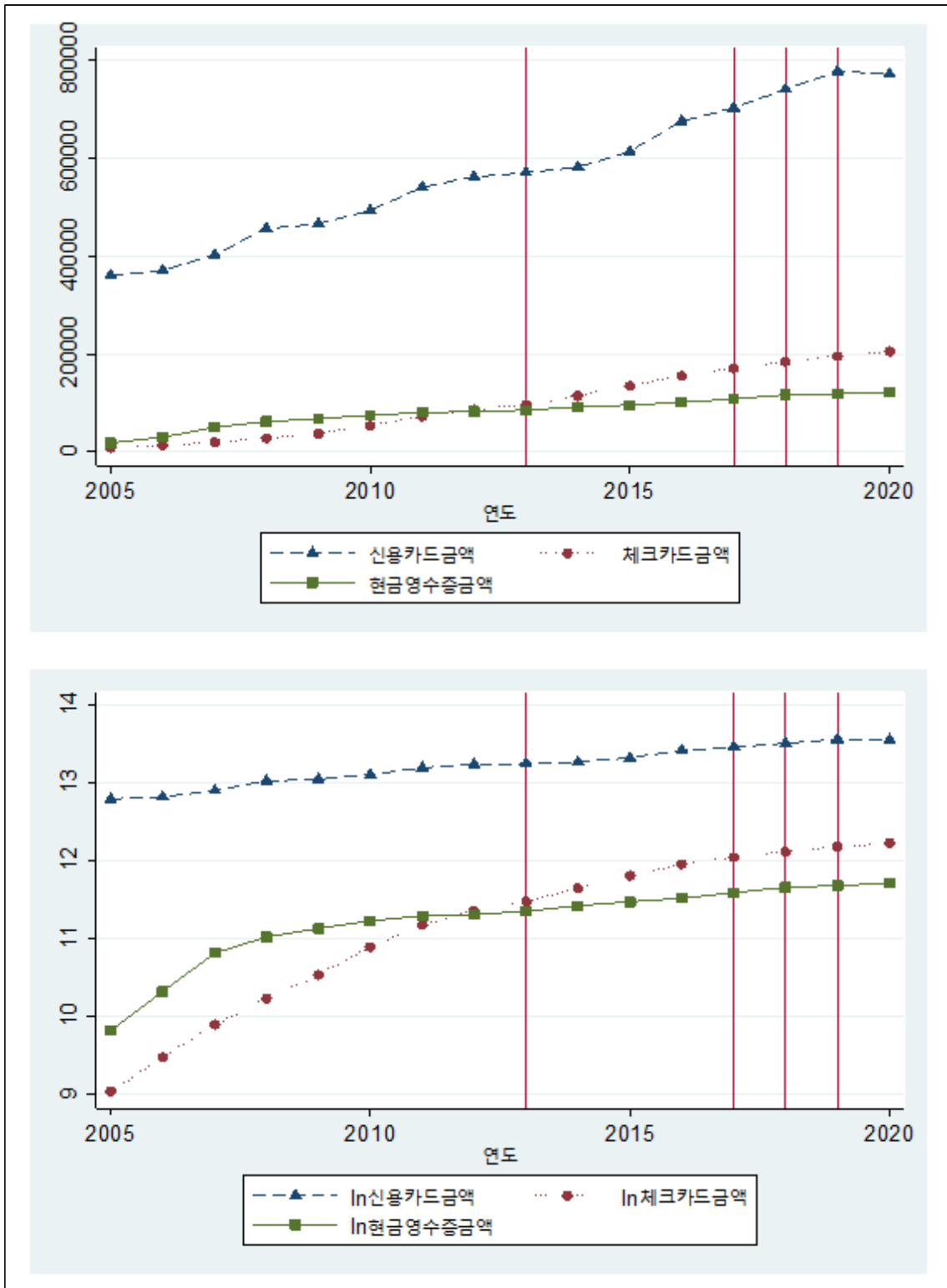
연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거래건수	금액	거래건수	금액	거래건수	금액
2005	448,936.0	18,559.8	1,009,462.0	360,698.7	1,622.5	8,475.7
2006	737,748.0	30,626.6	2,234,362.0	370,958.5	1,170.9	13,171.3
2007	1,489,273.0	50,256.1	2,196,238.7	403,117.3	904.5	19,946.1
2008	2,889,925.0	61,555.9	2,271,667.9	456,420.6	84,793.7	27,878.9
2009	4,441,966.0	68,698.4	2,668,429.4	466,358.1	209,952.5	37,797.0
2010	4,951,522.0	75,956.5	3,129,654.8	493,735.9	346,712.2	54,238.7
2011	5,187,350.0	80,890.1	3,483,154.1	540,793.8	534,091.9	71,864.6
2012	5,257,101.0	82,389.0	4,147,404.7	561,858.0	764,703.8	86,405.9
2013	5,227,216.0	85,515.2	4,880,084.8	570,642.8	1,080,057.8	97,349.6
2014	5,192,920.0	91,946.5	5,814,817.1	581,964.4	1,484,131.1	114,904.8
2015	5,045,846.0	96,546.4	6,593,241.6	614,241.2	1,963,673.5	135,261.3
2016	5,024,664.0	101,257.7	7,479,525.3	675,762.2	2,590,060.9	156,251.5
2017	4,792,949.0	108,655.3	8,153,659.7	702,861.9	3,478,009.1	171,343.6
2018	4,530,850.0	116,463.9	8,857,452.4	740,907.4	4,431,845.9	184,339.2
2019	4,508,772.0	118,576.2	9,818,447.1	777,983.9	5,431,629.8	196,134.7
2020	4,132,409.0	123,044.8	10,663,671.7	772,005.5	6,427,513.0	204,861.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2. 4. 26.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05~2020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패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즉, 세액공제 단가 인하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는 의무업종의 확대 및 지급대상 기준가격 인하 등이 있음

[그림 IV-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금액

(단위: 십억원)



주: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y축 해당 변수에 log를 취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2. 4. 26.

-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도 단가 조정을 전후로 기존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이용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이러한 추세 차이는 세액공제 단가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관측되었기 때문에 단가 조정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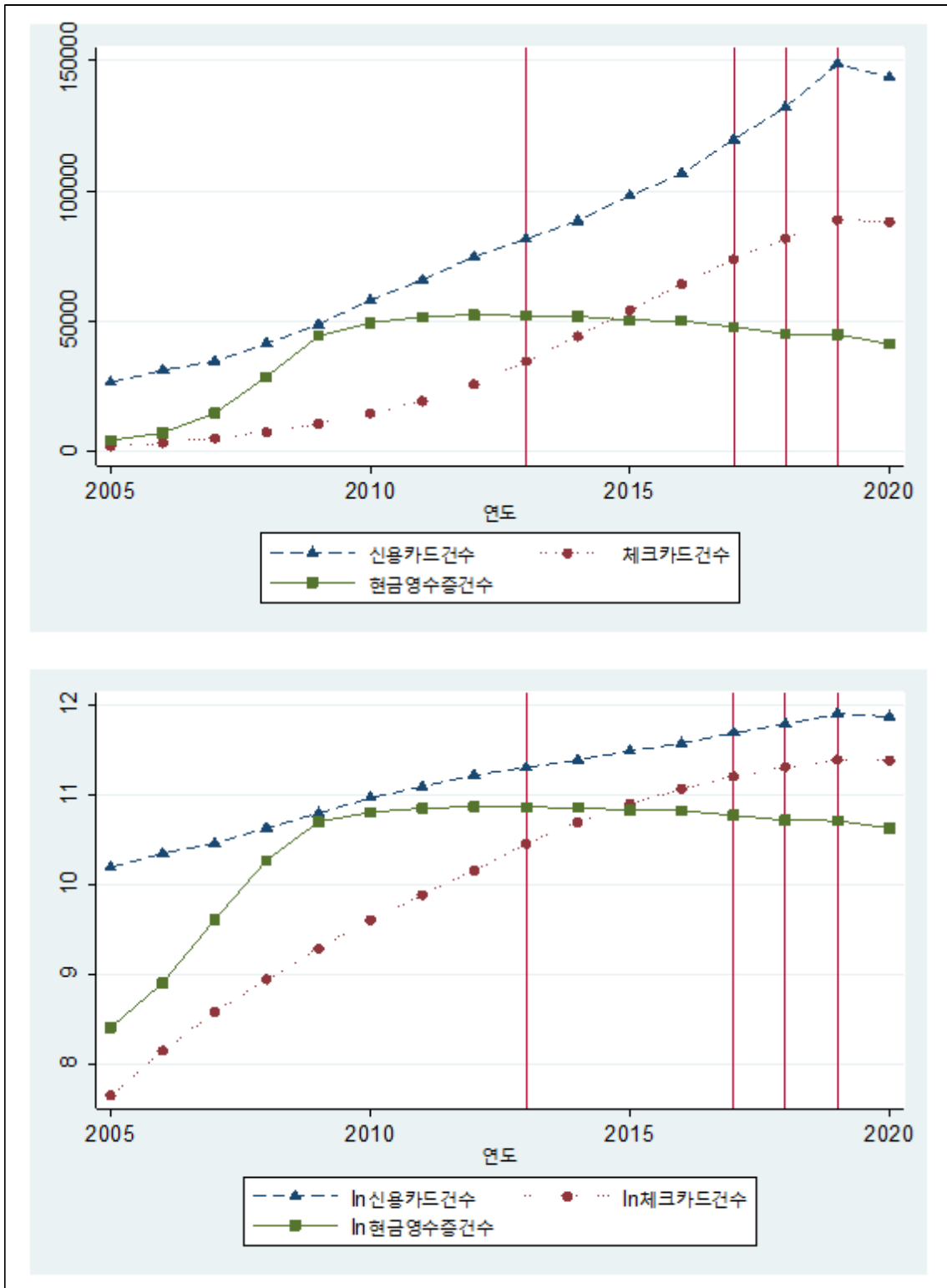
- 정다운·강동익(2020)에서는 단가조정에 따른 거래수단별 거래건수 및 금액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 및 event study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세한 단가조정이 전체적인 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및 과표양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확대 등이 있음
 - 부록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확대가 수입금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그림 IV-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건수

(단위: 십만건)



주: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y축 해당 변수에 log를 취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2. 4. 26.

V. 결론 및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 과세당국은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목표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함
 - 2008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이 건당 5,000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확대됨
 - 2010년 4월 1일부터는 32개의 업종, 30만원 이상인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

- 본 연구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하였고 현금사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수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제 대신 항구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거래 활성화로 전자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영수증 발급단가는 하락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종이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할 필요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될수록 전화망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지원 필요성 약화
 - 제도 인지도, 활용수준 등 고려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동 제도보다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를 유지할지 검토 필요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 국회예산정책처,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2005.
- 김재진,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2012.
- 김재진·황국재,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방법 및 적정금액 산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나성린·전영섭·홍성훈·허은정, 『공공경제학』, 제5판, 박영사, 2022.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 2017.
- 이준구·조명환, 『재정학』, 제6판, 문우사, 2021
- 정다운·강동익,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9.
- 한국은행, “2021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보도자료, 2022. 3. 23.

<웹사이트>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3059462/fileData.do>, 검색일자: 2022. 7. 12.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검색일자: 2022. 7. 1.
- _____,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검색일자: 2022. 7. 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2. 7. 1.
-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검색일자: 2022. 7.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2. 7.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2. 7. 1.

KIS정보통신, http://www.kisvan.co.kr/sub01_02_01.html, 검색일자: 2022. 7. 12.

부 록



부록

- 과세당국은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목표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함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⁴³⁾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의무발행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도 소비자 요구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나,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음
 - 의무발행 제도는 기존 현금영수증제도의 정보보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비자의 발행 요구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부록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도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신고행태 변화를 살펴봄
 - 2005~201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패널자료를 이용
 - 2010년 병원, 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유흥주점, 숙박업, 미용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었는데, 의무업종으로 지정된 업종과 그 외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 등의 변화를 비교해볼 수 있음
 - 의무발행업종의 수는 2010년 32개에서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15년까지 52개로 증가함
 -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체수, 수입금액, 결정세액이 소비자상대업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4%, 21.6%, 36.7%이고 2015년 24.67%, 28.75%, 42.98%임⁴⁴⁾
 - 실험군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통제군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정의할 수 있음

43) 2014년 7월부터 의무발행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됨

44) 종합소득세 2009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비자상대업종은 2022년 기준을 적용함

- 식별가정은 의무발행업종과 그 외 소비자상대업종의 종속변수가 제도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 평행한 추이를 보임
- 만약 의무발행업종 지정과 함께 해당 업종에 대한(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납세순응 제고 정책이 시행된다면 추정치에 편의가 있을 가능성

<부표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과 사업체수, 매출액, 결정세액 비중

(단위: 개, %)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사업체수 비중	매출액 비중	결정세액 비중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4.09	6.31	12.91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60	11.79	22.15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5.66	3.45	1.65
2010. 7. 1.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34	0.99	0.67
2014. 1. 1.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9.08	5.19	4.96
2015. 6. 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0.90	1.02	0.64

주: 비중은 소비자상대업종 대비 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비율임
 자료: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방법론은 Alm and Harris(2021)을 참고함

- Alm and Harris(2021)는 미국의 카드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미국은 2011년부터 American Express, Pay-Pal과 같은 지급결제기관과 Uber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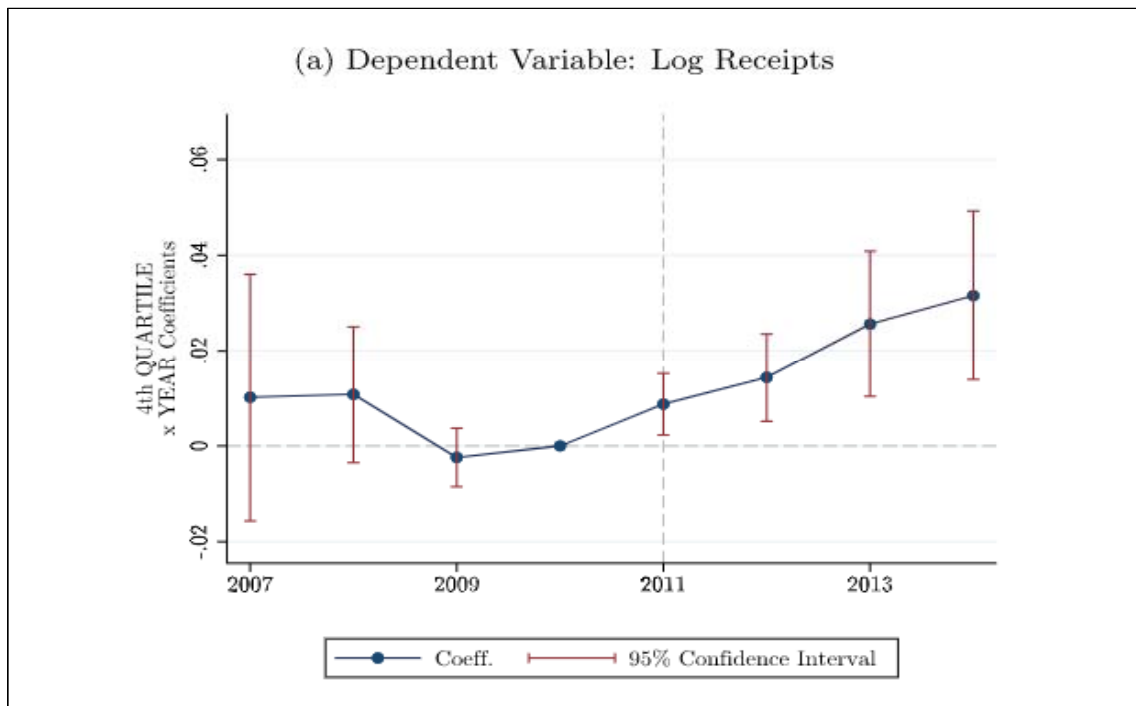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카드거래 정보(월별 거래금액 등)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저자들은 카드거래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제도 도입 전후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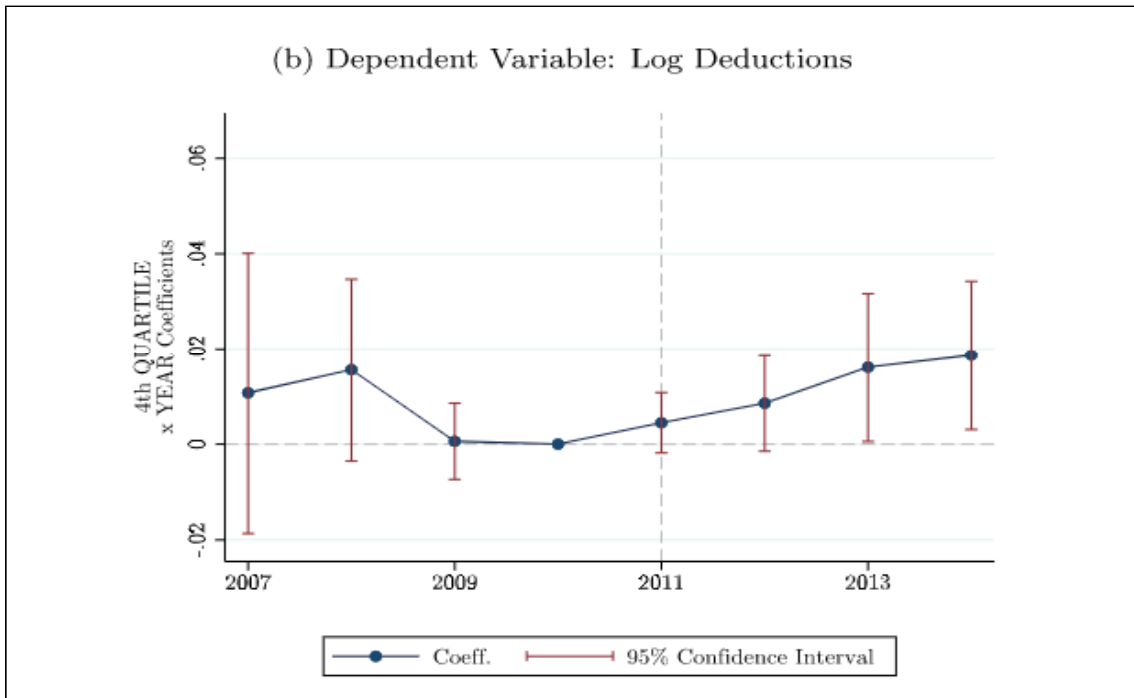
$$\text{Log}(Y_{ijt}) = \beta_1 \text{Post}_t \times \text{HighPC}_j + \beta_2 \text{Unemp}_{jt} + \alpha_i + \gamma_t + \epsilon_{ijt}$$

- Y_{ijt} : 지역 j에 있는 사업체 i의 t연도 수입금액
 - Post_t :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인지에 대한 지시(indicator) 변수
 - HighPC_j :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사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시변수
 - Unemp_{jt} : 지역 j의 t연도 실업률
- 분석자료는 8년의 균형패널 과세 미시자료와 지역별 신용카드자료
 - 분석 결과, 제3자에 의한 소득 보고가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납세순응 제고 효과는 규모가 작은 B2C 업종에서 크게 나타남
 - 필요경비 등 공제에 대한 효과는 수입금액에 비하여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부도 1] Alm, and Harris(2021)의 event study 결과



[부도 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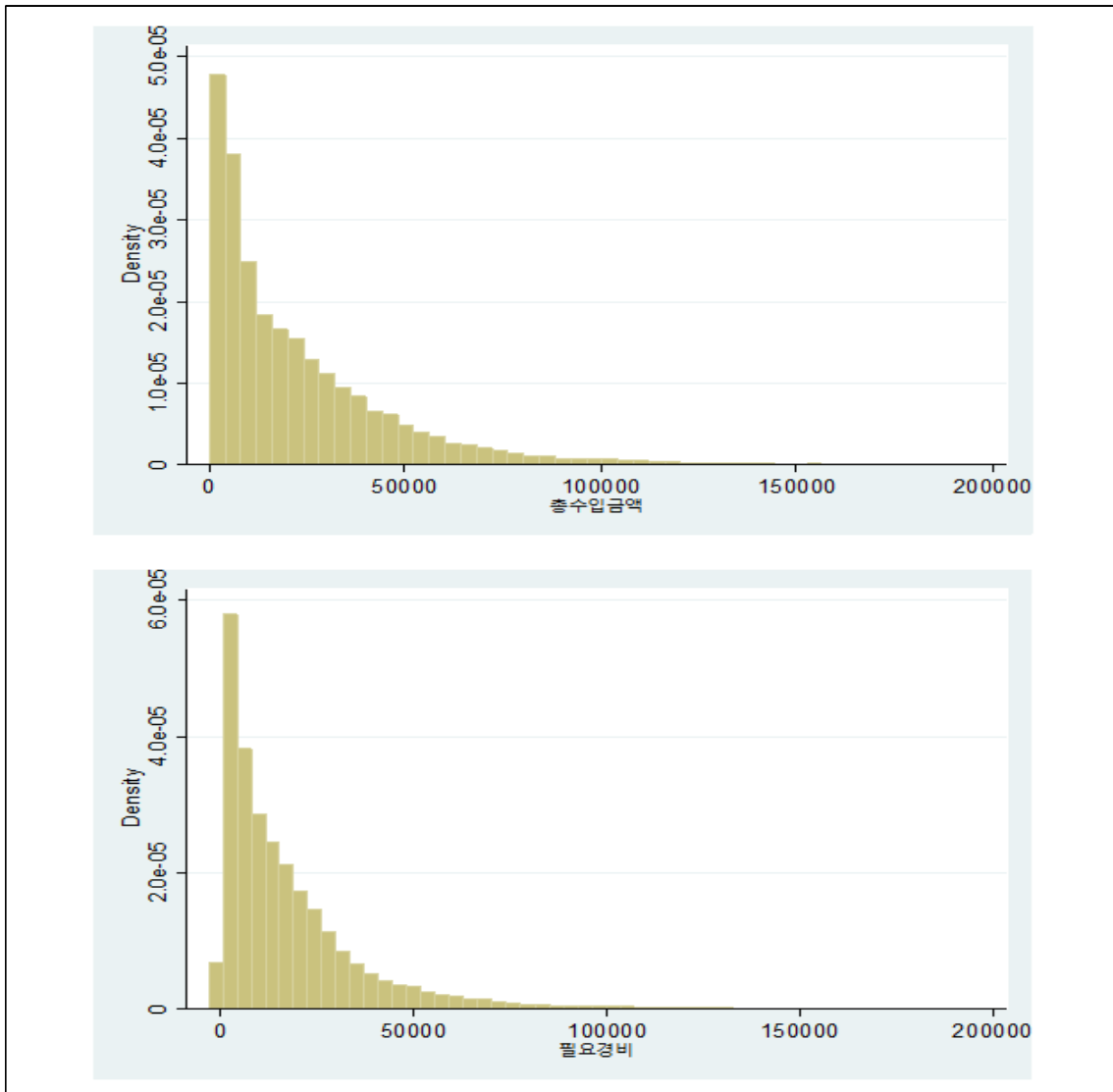


자료: Alm, and Harris(2021), p. 10, Figure 5

- 본 절의 분석 자료는 2005~2015 귀속연도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패널
 - 표본 기간 내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고 동질적인 사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균형패널을 이용함(Alm, and Harris, 2021)
 - 기간 내 업종이 동일한 사업자로 제한
 - 연간 평균 수입금액 혹은 필요경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2005~2015 귀속연도 총 55,366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였으며, 업종,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의 변수가 있음
 - 수입금액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억 3,451만원과 2억 5,623만원임
 - 필요경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억 8,889만원과 2억 1,445만원임

[부도 2]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분포

(단위: 만원)



주: 상단과 하단의 그림은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히스토그램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도 3]에는 이벤트스터디(event study)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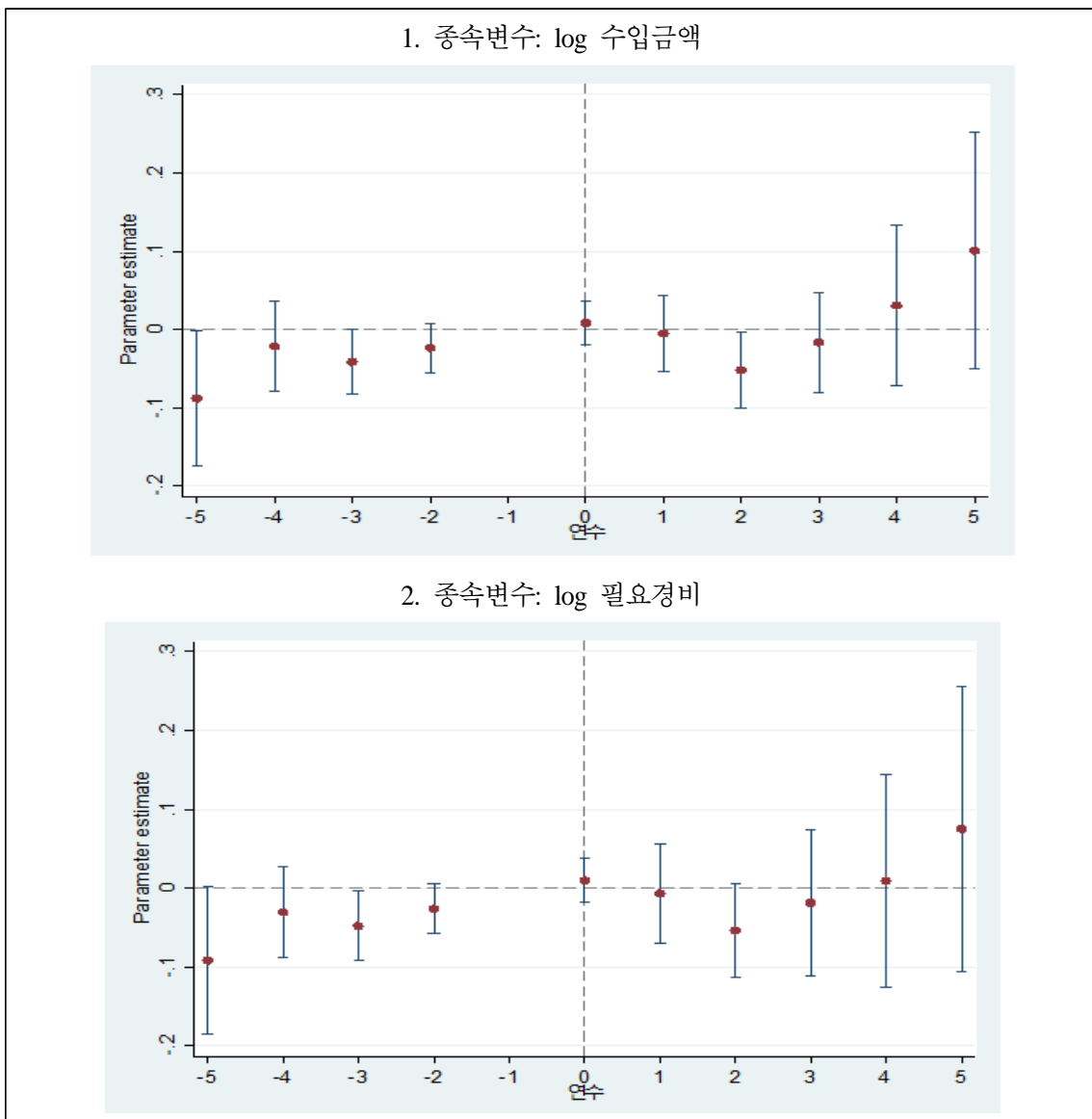
○ 이벤트스터디 추정식

$$\text{Log}(Y_{ijt}) = \sum_s \beta_s \text{의무업종}_j \times 1[s=t] + \alpha_i + \gamma_t + \epsilon_{ijt}$$

- Y_{ijt} : 업종 j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i의 t귀속연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 의무업종_j: 의무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간불변 지시변수
- 사업자 고정효과(α_i), 연도 고정효과(γ_t)

- 기준시점은 제도 시행 1년 전으로 각 추정계수는 제도 시행 1년 전 대비 정책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도 3]의 등근 점은 β_s 의 추정치, 실선은 95% 신뢰구간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의무업종 지정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의무업종 지정 5년 후 수입금액이 1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과표양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부도 3] 의무업종 지정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미친 영향



주: 상단과 하단의 그림은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히스토그램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표 2>~<부표 4>에는 이중차분법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이중차분법 추정식

$$\text{Log}(Y_{ijt}) = \beta_1 \text{의무업종}_{jt} + \alpha_i + \gamma_t + \epsilon_{ijt}$$

- 의무업종_{jt}: 의무업종 여부에 대한 지시변수
- 그 외는 이벤트스터디 추정식과 동일

○ <부표 2>에는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결과와 현재까지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한 결과가 함께 제시됨

- 의무업종 지정에 따른 유의미한 납세순응 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수입금액 추정치가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의 추정치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

<부표 2> 의무업종 지정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미친 영향

	전체 표본		2022년까지 미지정 업종 제외	
	ln수입금액 (1)	ln필요경비 (2)	ln수입금액 (3)	ln필요경비 (4)
추정치	0.0263 (0.0319)	0.0255 (0.0421)	0.0100 (0.0332)	0.0100 (0.0424)
관측치수	53,337	53,352	43,493	43,511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표 3>에서는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200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규모별 영향을 추정함

-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표본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경비보다 크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부표 3> 규모별 의무업종 지정 효과

	2009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2009년 수입금액 1억원 초과	
	ln수입금액 (1)	ln필요경비 (2)	ln수입금액 (3)	ln필요경비 (4)
추정치	0.0827 (0.0539)	0.1381 (0.0840)	-0.0143 (0.0301)	-0.0369 (0.0302)
관측치수	19,459	19,467	32,745	32,752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표 4>에서는 2010년 고소득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의무발행업종 지정의 효과를 업종별로 살펴봤는데,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음

<부표 4> 업종별 2010년 의무업종 지정의 효과

	종속변수	
	ln수입금액 (1)	ln필요경비 (2)
1. 전체		
추정치	0.0303 (0.0404)	0.0273 (0.0534)
관측치수	46,092	46,108
2. 변호사 등		
추정치	0.0359 (0.0749)	0.0288 (0.0664)
관측치수	29,217	29,226
3. 병의원 등		
추정치	0.005 (0.0314)	-0.0307 (0.0317)
관측치수	38,309	38,306
4. 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		
추정치	0.1138 (0.1015)	0.1972 (0.1594)
관측치수	29,978	29,976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록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액을 주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납세순응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업황, 물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향후 분석기간에 맞는 세부 업종별 실업률과 물가지수를 통제할 수 있을 경우 분석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음